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Sinodality in the life and mission of the Church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는 제9기(2014-2019년)의 5년 임기 중에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synodalitas)”이란 주제를 연구하였다. 이 작업을 책임 맡아 진행한 소위원회는 위원장 마리오 앙헬 플로레스 라모스(Mario Ángel Flores Ramos) 몬시뇰과 다음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프루덴스 알렌 (Prudence Allen, R.S.M.) 수녀, 로올라 공동체의 알렌카 아코(Alenka Ako) 수녀, 안토니오 루이스 카텔란 페레이라(Antonio Luiz Catelan Ferreira) 몬시뇰, 피에로 코다(Piero Coda) 몬시뇰, 카를로스 마리아 갈리(Carlos María Galli) 신부, 가비 알프레드 하셈(Gaby Alfred Hachem) 신부, 헤क्टर 구스 타보 산체스 로하스(Héctor Gustavo Sánchez Rojas, S.C.V.) 교수, 니콜라우스 세게자 음헬라(Nicholaus Segeja M'hela) 신부, 제라드 프란치스코 P. 티모너 3세(Gerard Francisco P. Timoner III, O.P.) 신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소위원회의 여러 회의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총회의 전체 회의들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문헌은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2017년 총회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서면 투표를 통하여 ‘특수한 형태로’(in forma specifica) 동의한 것이다. 이어서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위원장인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F. 라다리아(Luis F. Ladaria, S.I.) 추기경이 이 문헌을 승인하였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호의적인 동의를 얻은 뒤에 2018년 3월 2일 그 발행을 허가하였다.

서론

공동합의성의 중요한 때(kairós)

1. “공동합의성의 여정은 하느님께서 제삼천년기의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다.”¹⁾ 이것은 복자 바오로 6세 교황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을 기념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제시하신 기획 임무이다. 교황께서는 공동합의성이 “교회의 구성적 차원”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노드’라는 단어 안에 이미 모두 담겨 있다.”²⁾라고 강조하셨다.

2. 이 문헌은 이러한 임무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심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노선을 제시하고, 또한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공동합의성으로부터 도출되는 함의들에 대한 사목적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공동합의성’이라는 단어의 내용과 용법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어원적 또는 개념적 사항들을 기초적 형태로 언급하고, 이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교도권으로 주어진 가르침들의 함축적 의미와 새로움을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시노드, 공의회, 공동합의성

3. ‘시노드’는 교회의 거룩한 전승 안에서 사용되어 온, 오래되고 존중되어야 할 단어이다. 그 의미는 계시의 더 깊은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다. 전치사 ‘쉴’(σύν: -와 함께)과 명사 ‘호도스’(ὁδός: 길)가 합성된 이 단어는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당신 자신이 “길ियो 진리요 생명”(요한

14,6)이라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을 상기시키고, 또한 본디부터 그분의 뒤를 따라 “그 길을 따르는 이들”이라고 불리던 그리스도인들을 연상시킨다(사도 9,2; 19,9.23; 22,4; 24,14.22 참조).

교회 그리스어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에 함께 부름받았음을 나타내며, 어떤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된다.³⁾ 예를 들어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교회가 곧 “함께 가는 길(σύνοδος)에 대한 이름”⁴⁾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를 설명하면서, 교회는 하나의 합창단처럼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려고 부름받은 회중이며, 모든 것을 지니고 있는 조화로운 실재 (σύστημα)라고 말한다. 교회를 구성하는 이들이 그들의 상호적이고 질서 있는 관계들을 통하여 애덕(ἀγάπη)과 같은 생각(ὁμονοία) 안에서 일치를 이루기 때문이다.

4. ‘시노드’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초세기부터 점차 나타나는 교리적, 전례적, 교회법적, 사목적 문제들을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령께 귀를 기울이면서 식별하고자 교구, 관구 또는 지역, 총대주교구, 세계 등 여러 차원에서 소집된 교회의 집회들을 지칭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그리스어 ‘쉬노도스’(σύνοδος)는 라틴어 ‘시노두스’(synodus) 또는 ‘콘칠리움’(concilium)으로 번역된다. ‘콘칠리움’은 세속적 용법에서는 합법적 권위로 소집된 집회를 일컫는다. ‘시노드’와 ‘공의회’(concilium)의 어원은 서로 다르지만, 그 의미는 하나로 모아진다. ‘콘칠리움’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시노드’의 의미론적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해 준다. 이 단어가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집회’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카할’(קָהָל), 그리고 이를 그리스어로 옮긴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곧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 백성을 종말론적으로 불러 모으심’을 일컫는 단어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공의회’와 ‘시노드’라는 단어의 용법을 구별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단어들은 공의회적 회합들을 가리킬 때 동의어로 사용된다.⁵⁾ 정확한 설명은 라틴 교회의 『교회 법전』(1983년)에서 도입되는데, 여기에서는 한편으로 개별(지역) 공의회(전국 또는 관구 공의회)⁶⁾와 보편 공의회,⁷⁾ 다른 한편으로 주교 시노드⁸⁾와 교구 시노드⁹⁾를 구별한다.¹⁰⁾

5. 지난 수십 년 동안 발행된 신학, 교회법, 사목 문헌들에서 신조어인 명사 ‘공동합의성/시노달리타스’(synodalitas)가 나타난다. 이 명사는 형용사 ‘공동합의적인/시노드적인’(synodale)과 연관된 것으로서, 그 둘 모두 ‘시노드’에서 파생된다. 그래서 공동합의성은 교회의, 간단히 말하여 ‘시노드적인 교회’의 ‘구성적 차원’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새로운 용어는 신학적인 규명을 요구하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도권으로부터, 그리고 그 마지막 공의회 이후 지금까지 지역 교회와 보편 교회 안에서 살아온 체험으로부터, 교회의 의식 안에서 성숙된 결과를 보여 준다.

친교, 공동합의성, 단체성

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에서 공동합의성이라는 단어와 개념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공동합의성에 대한 요구는 공의회가 약속한 새신 작업의 중심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하느님 백성’의 교회론은 실상 다양한 형태로 행사되는 세례 받은 모든 이의 공통된 품위와 사명, 그리고 그들의 은사와 소명, 직무의 질서 있는 풍요로움을 강조한다. 친교의 개념은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의 신비와 사명의 심오한 실체를 표현해 주는데, 성찬례 모임은 그 원천이며 절정이다.¹¹⁾ 친교의 개념은 **교회가 거행하는**

성사(Sacramentum Ecclesiae)의 실재(res)인 삼위일체 하느님과 이루는 결합과,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간들 사이의 일치(consensus)를 지칭한다.¹²⁾

이러한 교회론적 맥락 안에서 공동합의성은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modus vivendi et operandi)**의 고유한 특성을 가리킨다.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데에서, 회중의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복음화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에서 자신이 친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실현한다.

7. 공동합의성의 개념은 하느님 백성 전체가 교회의 삶과 사명에 관련되고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단체성(collegialitas)의 개념은 각자의 사목적 돌봄에 맡겨진 개별 교회에 봉사하며, 또한 로마의 주교와 함께하는 주교단의 교계적 친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보편적인 교회의 품 안에서 개별 교회들 사이에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의 직무 수행 형태와 그 신학적 의미를 규정한다.

그러므로 단체성은 교회의 공동합의성이 어떤 지역 안에서 개별 교회들 사이의 친교 차원에서, 그리고 보편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 사이의 친교 차원에서 주교들의 직무를 통하여 드러나고 실현되는 특수한 형태이다. 공동합의성이 참으로 언제나 드러나려면 그 본성상 주교들의 합의체적(collegiale) 직무 수행이 요청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뒤따르는 데에서 새로움의 시작

8.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적 친교, 주교들의 단체성 (collegialità episcopale), 공동합의적인 의식과 실천을 촉진하면서 제시한 쇄신의 열매들은 풍요롭고 또 매우 소중한 것들이다. 그러나 공의회가 구상한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할 과제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¹³⁾ 아니, 오늘날 공동합의성과 관련된 교회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극은, 비록 널리 공유되고 긍정적 실행 형태들을 경험해 보기는 하였어도, 분명한 신학적 원리들과 예리한 사목적 지침들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9.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초대하시는 새로움의 시작은 여기에서 비롯한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구상하였고 그 선임자들이 앞서 갔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유래하며 오늘날 역사 안에서 거룩한 성전에 대한 창조적 충실성 안에 육화되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공동합의성이 표현한다는 점을 강조하신다.

‘교회 현장’의 가르침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특히 공동합의성이 “우리에게 교계적 직무 자체를 이해하는 가장 적합한 해석의 틀을 제시한다.”¹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신자들의 신앙 감각(sensus fidei fidelium)**¹⁵⁾ 교리를 바탕으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복음화의 능동적 주체임을 강조하신다.¹⁶⁾ 따라서 공동합의적 교회를 실천하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참여하는 선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이다.

나아가 공동합의성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일치 노력의 중심에 자리한다. 이는 공동합의성이 충만한 친교를 향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초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진리의 빛에 비추어 서로 선물들을 교환하는 논리 안에서 합법적 다양성들이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교회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바로 공동합의성이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한 이해는 항상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헌의 목적과 구성

10. 이 문헌의 처음 두 장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에 일치하는 가톨릭 교회론의 전망 안에서 공동합의성의 신학적 의미를 심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 제1장은, 성경과 성전의 규범적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가 교회의 공동합의적 모습이 계시의 역사적 전개 과정 안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규명할 것이며, 또한 공동합의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실천을 규정하는 기본 특징들과 명확한 신학적 기준들을 밝힐 것이다.

제2장은, 먼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론적 교리에 따라 공동합의성의 신학적 기초들을 제시한 다음, 선교적 사명을 받아 역사 안에서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의 전망에, 그리고 친교인 교회의 신비에 그 기초들을 연결시킬 것이다. 또한 교회의 특징적 속성들인 단일성, 거룩함, 보편성, 사도성에도 그 기초들을 연결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이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과 목자들의 권위 행사 사이의 관계를 더욱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제3장과 제4장은 몇 가지 사목적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먼저 제3장은, 여러 다양한 차원에서 곧 개별 교회 안에서, 어떤 지역 내 개별 교회들 사이의 친교 안에서, 그리고 보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합의성의 구체적 실현에 관하여 다룬다. 이어서 제4장은, 진정으로 공동합의적 교회를 체험하려는 영적 그리고 사목적 회심과 공동체적, 사도적 식별을 언급하면서, 교회 일치와 여정과 교회의 사회적 봉사 안에 그것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제1장

성경과 성전, 그리고 역사 안에서 공동합의성

11. 성경과 성전 안에서 발견되는 교회의 공동합의적 삶에 대한 규범적 원천들은, 하느님과 일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교회의 직무를 통하여 실현되는, 하느님 안에서 인류 전체의 일치에 대한 소명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음을 증언한다. 이 원천들은 공동합의적인 삶과 구조와 과정과 사건들을 고무하고 규정해야 할 신학적 원리들을 식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노선들을 제공한다. 이 장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제1천년기와 제2천년기 동안 가톨릭 교회 안에서 발전되어 온 공동합의성의 형태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다른 교회들과 교회적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온 공동합의적 실천들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 볼 것이다.

1.1. 성경의 가르침

12. 구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곧 남자와 여자를 당신 모습으로 그리고 당신과 비슷하게, 곧 세상을 돌보고 세상이 그 목적을 향하게 하면서 친교의 표지 아래 그분과 협력하도록 부름받은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증언한다(창세 1,26-28 참조). 처음부터 죄는 하느님 계획의 실현을 위협하고, 창조의 진선미가 표현되는 질서 있는 관계망을 깨뜨리며, 인간의 마음 안에서 그의 소명을 흐리게 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당신의 풍요로운 자비로 계약을 확인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어, 흩어진 것을 다시 일치의 길로 이끄시고 인간의 자유를 치유하시며, 그 자유가 하느님과 결합하고 또한 피조물의 공동의 집 안에서 형제들과 일치하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을 지향하게 하신다(예를 들어, 창세 9,8-17; 15장; 17장; 탈출 19-24장; 2사무 7,11 참조).

13.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불러 모으신다(창세 12,1-3; 17,1-5; 22,16-18 참조). 이러한 불러 모음은(‘카할’[קָח]/‘에다’[עָדָה] - 첫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자주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로 번역된다.) 시나이에서 계약을 맺음으로써 확인되며 (탈출 24,6-8; 34,20 이하 참조), 종살이에서 해방된 백성에게 하느님의 대화 상대로서 품위를 부여한다. 그 백성은 이집트 탈출의 여정 안에서 주님의 배타적 속성들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법대로 살고자 주님 주위에 모인다(신명 5,1-22; 여호 8장; 느헤 8,1-18 참조).

‘카할’[קָח]/‘에다’[עָדָה]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적 소명이 드러나는 본디 형태이다. 광야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인구 조사를 명하시고 그 각각에게 자리를 정해 주신다(민수 1-2장 참조). 그 회중의 한가운데에는 유일한 안내자이며 목자로서 주님께서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모세의 직무를 통하여 현존하신다(민수 12장; 15-16장; 여호 8,30-35 참조). 그리고 재판관들(탈출 18,25-26 참조), 원로들(민수 11,16-17.24-30 참조), 레위인들(민수 1,50-51 참조)이 종속적이고 단체적 방식으로 모세에게 연결된다. 하느님 백성의 회중은 남자들만이 아니라(탈출 24,7-8 참조)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외국인들도(여호 8,33.35 참조) 포함한다. 그 회중은 주 하느님께서 계약을 갱신하실 때마다 불러 모으시는 계약 **상대자**이다(신명 27-28 장; 여호 24장; 2열왕 23장; 느헤 8장 참조).

14.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하느님 백성에게 계약에 충실하면서 역사의 길을 따라 걸으라는 요구를 일깨운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느님을 향한 마음의 회개, 그리고 이웃과 관계에서 정의를 향한 마음의 회개로 초대한다. 그 정의는 특히 가난한 이, 억눌린 이, 외국인에 대한 것이며 주님의 자비를 눈에 보이게 증언하는 것이다(예레 37,21; 38,1 참조).

이것이 실현되도록 하느님께서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에제 11,19 참조), 당신 백성 앞에 새로운 이집트 탈출을 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예레 37-38장 참조). 그분께서는 이제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지지 않고 마음에 새겨진 새 계약을 맺으실 것이다(예레 31,31-34 참조). 그 계약은 보편적 지평으로 확장될 것이다. 주님의 종이 겨레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이사 53장 참조), 당신 백성의 모든 구성원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써 그 계약이 봉인될 것이기 때문이다(요엘 3,1-4 참조).

15. 하느님께서서는 약속하신 새 계약을 나자렛의 예수님 안에서 실현하신다. 그분께서는 메시아이시며 주님으로서, 당신의 **케리그마**를 통하여, 그리고 당신의 삶과 인격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당신 자비와 은총으로 온 인류를 일치 안에 끌어안고자 하시는 사랑의 친교이심을 계시하신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영원으로부터 사랑으로 아버지의 품을 향하여 계시며(요한 1,1.18 참조), 때가 찼을 때에 사람이 되시어(요한 1,14; 갈라 4,4 참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다(요한 8,29; 6,39; 5,22.27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혼자 행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 성부께서는 예수님 안에 머무시면서, 세상에 보내신 아드님을 통하여 몸소 당신의 업적을 이루신다(요한 14,10 참조).

아버지의 계획은 예수님의 파스카 안에서, 곧 그분께서 당신 생명을 내놓으신 뒤에 부활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으시고(요한 10,17 참조) 성령을 “한량없이”(요한 3,34) 부어 주심으로써, 당신 제자들을 그 생명에 참여하도록 그 자녀적이고 형제적 삶을 이루게 하실 때에, 비로소 종말론적으로 성취된다. 예수님의 파스카는 새로운 이집트 탈출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통하여 신앙 안에서 그분을 믿는 모든 이를(요한 11,52 참조)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당신과 일치시켜 마침내 하나로 모으신다(συναγάγη εἰς ἓν). 구원의 업적은, 예수님께서

수난을 눈앞에 두시고 아버지께 청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치이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한 17,21).

16.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길”(루카 20,21)을 알리시고 그 방향을 따라가시며(루카 9,51-19,28 참조),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는(루카 4,14-15; 8,1; 9,57; 13,22; 19,11 참조) 순례자이시다. 그분 자신이 아버지께 가는 “길”(요한 14,6)로서, 성령 안에서(요한 16,13 참조) 사람들에게 진리, 그리고 하느님과 또한 형제들과 친교라는 생명을 전해 주신다. 예수님의 새 계명의 기준에 따라 친교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역사 안에서 새 계약의 하느님 백성으로서 자신이 받은 선물에 합당하게(요한 15,12-15 참조) 걸어가는 것을 뜻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을 당신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빵으로 양육하신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인도로 길을 걸어가는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살아 있는 표상을, 우리는 루카 복음서 저자가 묘사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루카 24,13-35 참조).

17.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전달하시는 능력을 가리키고자 한 가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한다. 예수님께서 성부로부터 받으셨으며, ‘성령의 힘’인 ‘뒤나미스’(δύναμις) 안에서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행사하시는 그 능력은 곧 ‘엑수시아’(ἐξουσία, 신적 권위를 의미함)라고 일컬어진다. 그 신적 권위는 “하느님의 자녀”(요한 1,12)가 되게 하는 은총을 전달하는 데 있다. 사도들은 그러한 신적 권위를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받게 되었으며, 그분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당신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라고 사도들을 파견하신다(마태 28,19-20 참조).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은 세례를 통하여 이 신적 권위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성령의 기름부음’(1요한 2,20,27 참조)을 통하여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으며(요한 6,45 참조) “모든 진리 안으로”(요한 16,13) 인도되는 것이다.

18. 부활하신 주님의 ‘엑수시아’, 곧 그 신적 권위는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을 건설하시고자 하느님 백성 안에 베풀어 주시는 다수의 영적 선물들(τα πνευματικά) 또는 ‘은사들’(τα χαρίσματα)을 통하여 표현된다. 그런데 그 선물들과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객관적인 질서(τάξις)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전개되어 모든 이를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1코린 12,28-30; 에페 4,11-13 참조). 그 가운데 첫째는 사도들이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에게 고유하고 가장 뛰어난 역할을 주셨다(마태 16,18-19; 요한 21,15 이하 참조). 사도들에게는 **신앙의 유산**(depositum fidei)을 충실하게 보존하며 교회를 이끄는 직무가 맡겨졌다(1티모 6,20; 2티모 1,12,14 참조). 그렇지만 은사(χάρισμα)라는 단어는, 또한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각자에게 고유한 선물을 주시는 성령의 자유로운 주도권 속에 드러나는 무상성과 다양한 형태를 우리에게 상기시킨다(1코린 12,4-11. 29-30; 에페 4,7 참조). 그러므로 모든 은사의 사용은 항상 상호 복종과 상호 봉사의 논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코린 12,25 참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선물은 사랑이기 때문이다(1코린 12,31 참조).

19. **사도행전**은 하느님의 백성이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공동체적으로 식별하도록 부름받았던, 사도 교회 여정의 몇몇 중요한 순간들을 증언한다. 이 여정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주인공은 오순절에 교회에 부여하신 성령이시다(사도 2,2-3 참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걸어가야 할 길을 식별하려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책임이다(사도 5,19-21; 8,26.29.39; 12,6-17; 13,1-3; 16,6-7.9-10; 20,22 참조). 그 좋은 예로서, 사도들이 “식탁 봉사”의 임무를 맡기고자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선택한 것(사도 6,1-6 참조)과,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에서 결정적인 문제에 대하여 식별한 것(사도 10장 참조)을 들 수 있다.

20. 이러한 문제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사도 공의회’라고 불려온 회의에서 다루어진다(사도 15장; 또한, 갈라 2,1-10 참조). 여기에서는 사도 교회가 그 여정의 결정적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 현존의 빛을 통하여 선교의 관점에서 자신의 소명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공동합의의 사건이 이루어짐을 알아볼 수 있다. 이 사건은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서 거행된 시노드들의 원형적 모습으로 해석될 것이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그 사건의 역동성을 정밀하게 묘사한다. 안티오키아의 공동체는 공동체에 제기된 분쟁과 논란 때문에, 이에 관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원로들에게”(사도 15,2) 문의하기로 결정하고서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그들에게 파견한다. 예루살렘 공동체, 곧 사도들과 원로들은 곧 함께 모여(사도 15,4 참조) 상황을 검토한다.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일어난 일을 보고하자, 이어서 활발하고 솔직한 논쟁(ζητήσεως, 사도 15,7)이 이루어진다. 특히, 베드로의 권위 있는 증언과 신앙 고백을 모두가 듣는다(사도 15,7-12 참조).

야고보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ἐξ ἔθνῶν λαόν) 백성을”(사도 15,14) 선택하신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를 증언하는 예언에 비추어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고(아모 9,11-12; 사도 15,14-18 참조), 몇 가지 행동 규칙을 제시하며 최종 결정을 내린다(사도 15,19-21 참조). 그의 담화는 하느님의 계획에 견고하게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구원 역사의 점진적 전개를 따라 함께하고자 하는 열린 교회의 사명에 대한 전망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내려진 결정과 함께 지켜야 할 실천 지침들을 전달하는 편지를 전하려고 파견할 이들을 뽑는다(사도 15,23-29 참조). 그 편지는 안티오키아 공동체에게 전해져서 낭독되고, 공동체는 이를 기뻐한다(사도 15,30-31 참조).

21. 각자의 역할과 기여하는 바는 서로 다르지만, 그 과정에서는 모든 이가 다 주인공들이다. 그 질문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게(πᾶν τὸ πλῆθος, 사도 15,12) 주어진다.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이 전개 과정에 모두 함께하여 마지막 결정에 참여한다. “그때에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ἔδοξε τοῖς ἀποστόλοις καὶ τοῖς πρεσβυτέροις σὺν ὅλῃ τῇ ἐκκλησίᾳ, 사도 15,22) 마지막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질문을 받은 것은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도들과 원로들이다. 여기서 사도들은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를 가리키는데, 이들이 직접 말을 하게 된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에 충실하도록 보증하며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작용에 힘입어 결정을 내린다. “성령과 우리는 [...] 결정하였습니다”(사도 15,28).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가 그 결정을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삼고(사도 15,22 참조), 이어서 안티오키아 공동체도 그렇게 한다(사도 15,30-31 참조).

처음의 의견 차이와 활발한 토론은, 하느님의 활동에 대한 증언과 서로의 판단을 교환하여 서로 함께 성령의 뜻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만장일치적 합의(ὁμοθυμαδόν, 사도 15,25 참조)에 도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 합의는 교회의 복음화 사명을 위한 공동체적 식별의 결실인 것이다.

22. 예루살렘 공의회는 전개 과정은, 각자 자신의 위치와 고유한 역할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서로 결합되어 있어 질서 정연한 실재인 하느님 백성의 여정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1코린 12,12-17; 로마 12,4-5; 에페 4,4 참조).

바로 사도는 성찬 모임에 비추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표상을 제시함으로써 유기체의 단일성과 더불어 그 지체들의 다양성을 표현한다. 인간의 몸 안에서 모든 지체 각각의 고유성이 필요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모든 이가 세례에 힘입어 동등한 품위를 지니는(갈라 3,28; 1코린 12,13 참조) 동시에, 또한 모든 이가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에페 4,7)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데에 각자 이바지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모든 이는 공동체의 삶과 사명에 공동 책임이 있다. 모든 이가 같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는다는 점에서(1코린 15,45 참조), 이들은 각자의 특별한 직무와 은사를 존중하며 상호 연대성의 법칙에 따라 일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23. 하느님 백성의 여정의 종착점은 하느님 영광의 찬란한 광채에 싸여 있고 천상의 전례가 거행되는 새 예루살렘이다. 요한 묵시록은 거기에서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양”을 본다. 그 어린양은 하느님께 자신의 피를 통하여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속량하였고, “그들이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천상의 전례에는 천사들과 “수백만 수억만”의 사람들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참여할 것이다(묵시 5,6.9.11.13 참조). 그 때에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묵시 21,3).

1.2. 제일천년기 교부들과 성전의 증언

24. 장소와 문화, 그리고 상황과 시대의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향한 길에 항구하게 머무는 것은, 하느님 백성이 여러 민족들의 체험 안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복음에 충실히 다가가기 위하여 응답하도록 부름받은 도전이다. 공동합의성은 처음부터 교회의 사도적 기원과 보편적 소명에 대한 창조적 충실성의 보증이며 구현으로서 전개되었다. 그것은 본질에서는 단일한 형태로 표현되지만, 거룩한 전승의 살아 있는 발전 안에서 성경의 증언에 비추어 점차적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그 단일한 형태는 상이한 역사적 순간들에 따라, 그리고 상이한 문화들과 사회적 상황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근본은 같지만 다양하게 변화한 모습들을 갖게 된다.

25. 2세기 초 안티오키아의 이나시오의 증언은, 스스로를 오직 하나인 교회의 연대적 표현으로서 인식하던 지역 교회들의 공동합의적 의식을 보여 준다. 에페소 공동체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세례의 품위와 그리스도와 나누는 우정으로 말미암아 ‘쉬노도스’(σύνοδος, 복수형은 σύνοδοι), 곧 ‘여정의 동반자’ 들이 된다고 말한다.¹⁷⁾ 또한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일치의 찬미가를 부르도록 부름받은¹⁸⁾ 교회를 결합시키는 신적 질서를 강조한다.¹⁹⁾ 사제단은 주교의 평의회이며,²⁰⁾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고유한 방법으로 교회를 건설하도록 부름받는다. 교회적 친교는 주교가 집전하는 성찬 모임에서 이루어지고 드러난다. 이를 통하여, 지금 신앙으로 그 친교를 이루며 살아가고 기념하는 모든 공동체를 역사의 종말에 하느님께서 당신 나라에 모으시리라는 의식과 희망이 자라나게 된다.²¹⁾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충실성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의 인도 아래 이루어지는 성찬 거행, 그리고 여러 직무들의 질서 있는 수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서로 봉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친교의 수위성, 바로 이것들이 참된 교회를 구별해 주는 특징들이다. 3세기 중반에 이러한 전승을 물려받아 해석한 카르타고의 치프리아노 성인은, 지역적 차원에서 그리고 보편적 차원에서 교회의 삶과 사명을 다스려야 하는 주교적이며 또한 동시에 공동합의적 원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지역 교회 안에서 “**주교 없이는 아무것도**”(nihil sine episcopo)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의(사제들과 부제들의) 조언 없이** 그리고 **백성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nihil sine consilio vestro et sine consensu plebis)²²⁾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여기서 언제나, “**주교직은 하나이며, 각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을 통하여 전체에 동참하게 된다.**”(Episcopatus unus est cuius a singulis in solidum pars tenetur.)²³⁾는 규칙이 견지되어야 한다.

26. 지역 교회들 사이의 친교를 드러내고 촉진하는 교회 관구들이 4세기부터 형성되었는데, 이 교회 관구들은 수도(首都) 대주교(Metropolita)를 그 수장으로 하고 있었다. 이제 공동의 논의를 위하여 관구 시노드가 개최되는데, 이는 교회의 공동합의성을 행사하는 특별한 수단이 되었다.

니케아 공의회(325년)의 법규 제6조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좌(座)의 우위성(πρεσβεία)을 인정하고, 지역 차원의 수위권을 인정한다.²⁴⁾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381년)에서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좌가 이 주요 좌들의 목록에 추가된다. 법규 제3조는 이 도시의 주교에게 로마의 주교 다음 가는 명예직을 인정하는데,²⁵⁾ 이 호칭은 칼케돈 공의회(451년) 법규 제28조로 확인되며,²⁶⁾ 이때에 예루살렘 좌가 또한 목록에 추가된다. 동방에서 이 다섯 주교좌 체계(pentarchia)는 다섯 사도좌들 사이의 친교와 공동합의성을 행사하는 형태이며, 그 보증으로 여겨진다.

서방 교회는 동방 총대주교들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로마 교회를 다른 총대주교구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 교회에 대한 특별한 수위권을 로마 교회에 부여한다.

27. 3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 동방에서 잘 알려져 있는 『사도들의 법규』 제34조는, 지역 교회 주교의 관할을 넘어서는 모든 결정은 공동합의를 통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각 민족(ἔθνος)의 주교들은 자신들 가운데 첫째(πρότος) 주교를 인정해야 하고, 그를 자신들의 머리(κεφαλή)로 여기며, 그의 동의(γνώμη) 없이는 어떤 중요한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 으뜸(πρότος)은 모든 이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²⁷⁾ 이처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치(ὁμόνοια)로 공동합의적 행위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려는 것이다. 지역과 관구, 그리고 나아가 총대주교구 차원에서 으뜸(πρότος)의 역할은 각 해당 차원에서 시노드를 소집하고 주재하여 공통된 문제들에 대처하고, 공동합의를 위한 주교들의 모임을 통하여 드러나는 주님의 권위(ἐξουσία)에 힘입어 필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이다.

28. 3세기부터 지역 안에서 발생한 규율, 경신례, 교리에 관한 문제들이 시노드에서 논의되었는데, 비록 이 시노드들이 교구와 관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개최되기는 하였지만, 여기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모든 교회의 친교의 표현이라는 확신은 매우 견고하였다. 이처럼 각각의 지역 교회가 하나이고 보편된 교회의 표현이라는 의식을 증언해 주는 교회적 감각은 시노드 서간들의 교신, 다른 교회들에 전달된 시노드 규범집, 여러 좌들 상호 간의 승인 요청, 가끔 어렵고 위험한 여행을 수반하였던 사절 교환 등을 통하여 드러난다.

로마 교회는 처음부터 특별하게 여겨졌는데, 이는 그곳에서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가 순교하였기 때문이고,

로마의 주교는 베드로의 후계자로 인정되었다.²⁸⁾ 그 안에서 굳건하게 수호된 사도적 신앙, 교회들 사이의 친교에 봉사하려고 로마의 주교가 행사한 권위 있는 직무, 그 안에서 확인되는 공동합의적 삶의 풍부한 실천으로 로마 교회는 모든 교회들을 위한 기준점이 되고, 교회들은 논쟁을 해결하고자 로마 교회에 문의하며,²⁹⁾ 그래서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상소하는 좌의 역할을 하게 된다.³⁰⁾ 그리하여 로마 좌는 서방에서, 행정적 차원과 법적 차원에서 다른 교회들에게 조직화의 원형이 되기에 이른다.

29. 325년 니케아에서 역사상 첫 번째 보편 공의회가 황제의 소집으로 개최된다. 동방의 여러 지역에서 온 주교들과 로마 주교의 사절들이 여기에 참석하였다. 역사의 여러 경우들에서 그러하였듯이 여기서도 그 수용에서 진통을 겪기는 하였지만, 이 공의회는 신앙 고백과 법규적 결정들은 교회 전체를 위한 규범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주교들의 직위가 공동합의적으로 행사됨으로써, 하느님 백성의 여정을 성령 안에서 이끌고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권위(ἐξουσία)가 보편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표현되기에 이른다. 그 이후 개최된 제일천년기의 보편 공의회들에서 유사한 체험들이 이루어지고, 이 공의회들을 통하여 하나이며 보편된 교회의 정체성이 규범적으로 부각된다. 이 공의회들에서 보편 공의회는 권위 행사를 위하여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이 점진적으로 명확해졌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 교회 수장들의 조화(συμφωνία), 로마 주교의 협력(συνεργεία), 다른 총대주교들의 동의(συμμόρφησις), 그리고 그 공의회는 가르침과 이전 공의회들의 가르침 사이의 일치이다.³¹⁾

30. 그 진행 양상(modus procedendi)을 보면, 제일천년기 동안 지역적 차원에서 열린 공의회들은 사도적 전승을 회복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진행에서는 공의회가 열린 문화적 맥락들에 따라서 고유한 특징을 갖게 되었다.³²⁾ 한 지역 교회의 시노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받으면서 참여한다.³³⁾ 관구 시노드의 경우, 참석자들은 여러 교회의 주교들이지만, 사제들과 수도승들도 나름대로 기여하려고 초대될 수 있었다. 제일천년기 동안 거행된 보편 공의회들에는 주교들만 참여하였다. 제일천년기 동안 널리 퍼진 공동합의적 실천을 형성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구 시노드와 관구 시노드였던 것이다.

1.3. 제이천년기 공동합의적 실천의 발전

31. 제이천년기가 시작되면서, 특히 11세기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와 로마 교회의 친교가 단절되고, 이후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그리고 예루살렘의 총대주교구들에 속한 교회 영토들이 이슬람의 정치적 지배 아래 속하게 되면서, 공동합의적 실천은 서방과 동방에서 점차 서로 다른 형태의 절차를 취하기 시작한다. 동방 교회들에서는 특히 총대주교구 차원과 관구 차원의 시노드들을 통해서 교부들의 전승에 따른 공동합의적 관습이 지속되었지만, 총대주교(Patriarcha)들과 관구장 대주교(Metropolita)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 시노드들도 또한 개최되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는 상임 주교회의(Σύνοδος ἐνδημούσα)의 활동이 확립되었는데, 4세기부터는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에도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노드에서는 전례 문제와 교회법 문제, 그리고 실천적 문제들을 검토하려고 정기적인 회합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비잔틴 시대와 1454년 이후 오스만 튀르크 시대에는 다양한 절차적 형태들을 통하여 이 시노드가 개최되었다. 상임 주교회의의 관습은 지금까지도 정교회들에서 지속되고 있다.

32.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그레고리오 개혁 그리고 교회의 자유(libertas Ecclesiae)를 위한 투쟁은 교황의 수위권 선언에 이바지하였다. 교황의 수위권은, 한편으로는 주교들이 황제에게 종속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만일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지역 교회들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었다.

5세기부터 로마 주교의 평의회 역할을 하였으며, 로마관구의 주교들뿐만 아니라 시노드가 거행되던 순간에 로마에 머물던 주교들, 그리고 신부들과 부제들까지도 참석하던 로마 시노드는 중세 공의회들의 본보기가 된다. 이 공의회들은 교황이나 교황 사절이 주재하였는데, 이는 주교들이나 성직자들만의 모임만이 아니라 서방 **그리스도교 세계(christianitas)**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교회적 권위를 가진 이들(주교, 아바스, 수도회 장상)과 더불어 세속 권력자들(황제, 임금, 고위 귀족의 대표자)뿐 아니라, 그 밖에 전문 신학자들과 교회법 학자들도 참석하였다.

33. 지역 교회 차원에서, 그리고 카를 대제가 제정하여 서로마 제국 안에서 시행되던 광범위한 공동합의적 관습들을 따르면서, 시노드들은 순수하게 교회적 성격을 상실하고 왕의 시노드 또는 국가 시노드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이제 왕의 주재 아래 주교들과 그 밖에 교회적 권위를 가진 인사들이 여기에 참여하였다.

중세에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공동합의적 관습이 되살아난 예도 없지 않았는데, 클뤼니 수도원의 수도승들이 한 일이 바로 한 가지 예이다. 그리고 주교좌성당 의전 사제단과 새로운 수도 공동체들, 특히 탁발 수도회들³⁴⁾ 또한 시노드 관습을 살아 있게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34. 중세 말에는 동시에 두 명, 나중에는 세 명이 스스로 교황이라고 주장한 서방 대분열(1378-1417년)을 계기로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 혼란스러운 문제는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년)를 통하여 해결되는데, 여기에서는 중세 교회법에서 비상시를 위하여 준비한 교회 법률을 적용하여 합법적 교황을 선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황의 수위권에 대하여 영구적인 공의회 통치의 우위를 정립하고자 하는 공의회 우위설의 길이 열리게 된다.

공의회 우위설의 신학적 정당화와 그 실천적 형태는 거룩한 전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역사에 한 가지 교훈을 준다. 곧 언제나 잠재하고 있는 분열의 위험을 피해 갈 수는 없으며, 교회의 머리와 지체들 안에서(in capite et membris) 지속적인 개혁은 공동합의적 실천의 올바른 실행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전승에 따르면, 그러한 관습의 보증으로서 교황의 수위권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35. 한 세기 뒤에 가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트리엔트 공의회를 개최한다. 이 공의회는 첫 번째 근대 공의회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중세와 같이 **그리스도교 세계(christianitas)**를 드러내는 공의회 모습은 지니고 있지 않으며, 주교들은 수도회와 관상 수도회의 장상들과 함께 회의에 참여하지만, 군주의 사절들은 회의에 참석한다 해도 투표권이 없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해마다 교구 시노드를 개최하고 삼 년마다 관구 시노드를 거행하는 규범을 제정함으로써 트리엔트 공의회 개혁의 추진력을 교회 전체에 전달하는 데에 기여한다. 그 본보기와 모범이 되는 것은 가롤로 보로메오 성인의 활동이다. 밀라노의 대주교였던 그는 자신의 임기 중에 다섯 번의 관구 시노드와 열한 번의 교구 시노드를 소집하였다. 아메리카에서는 리마의 주교 투 리비요 데 모그로베호 성인이 그와 유사한 기획을

하였는데, 그는 세 번의 관구 공의회와 열세 번의 교구 시노드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같은 세기에 멕시코에서는 세 번의 관구 공의회가 열렸다.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개최된 교구와 관구 시노드들은 당시의 문화에 따라 하느님 백성 전체, 곧 **신자들의 모임**(congregatio fidelium)의 능동적 참여를 목표로 하지 않고, 규범과 결정들을 전달하고 실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교회 권위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개혁 측의 비판과 근대 사상의 수많은 조류에서 제기되는 논쟁에 대한 호교론적 반응으로, 교회를 **불평등한 이들의 완전한 사회**(societas perfecta et inaequalium)라고 보는 교계 제도적 전망이 강조되었다. 나아가, 교황을 정점으로 하여 목자들로 구성된 **가르치는 교회**(Ecclesia docens), 그리고 하느님 백성의 나머지 다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배우는 교회**(Ecclesia discens)를 구분하기에 이른다.

36. 프로테스탄트 개혁으로 생겨난 교회적 공동체들(ecclesial communities)은, 가톨릭 전통과는 거리가 있는 교회론 그리고 성사와 직무에 관한 교리와 실천을 배경으로 특수한 한 가지 형태의 공동합의적 관습을 발전시킨다.

세례에서 유래하는 만인 사제직(sacerdotium commune)에 힘입어 일정 수의 신자들이 참여하는 교회적 공동체의 공동합의적 통치는, 루터교 신앙 고백에 따르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에 가장 부합하는 구조로 여겨진다. 모든 신자는 직무자 선출에 참여하고 복음의 가르침과 교회의 지침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도록 부름받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권은 사회의 통치자들이 행사하며, 이것은 과거에 국가와 긴밀하게 연관된 통치가 생겨나게 하였다.

개혁 전통의 교회적 공동체들에서는 장 칼뱅이 말한 네 가지 직무(목사, 박사, 장로, 집사)의 교리를 주장하는데, 이에 따르면 장로는 세례로 모든 이에게 주어진 품위와 권한을 대표한다. 그래서 장로들은 목사들과 함께 지역 공동체의 책임자들이다. 한편 공동합의의 실천에서는, 회합에 박사들과 다른 직무자들, 그리고 대다수의 평신도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다.

성공회의 삶 안에서 공동합의 관습은 모든 차원에서, 곧 지역과 국가와 초국가 차원에서, 항구하게 남아 있다. 성공회의 “**공동합의로 통치되지만 주교에 의하여 인도된다.**”(Synodically governed, but episcopally led.)라는 표현은, 단순히 입법권(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시노드에 해당함)과 집행권(주교들의 특징적 권한) 사이의 구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주교들의 은사와 개인적 권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 전체에 부여된 성령의 선물, 이 둘 사이의 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37.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년)는 교황의 수위권과 교도적 무류성의 교리를 승인하였다. “복된 베드로 안에 신앙의 일치와 친교의 영속적이고 가시적 근원과 토대가 마련”되었고, 공의회는 로마 주교의 수위권을 하느님 백성의 신앙에 봉사하기 위한 주교직의 단일성과 불가분리성의 보증이 되는 직무로서 제시한다.³⁵⁾ 교황이 **성좌 선언으로**(ex cathedra) 내린 교의 결정은 “그 자체로 변경될 수 없고 교회의 동의에서 나오지 않은 것”³⁶⁾이라는 문장은, “**교회의 동의**(consensus Ecclesiae)를 잉여적인(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것이 되게 하지 않으며”, 자신의 특별한 직무에 따른 교황의 고유한 권위 행사를 선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⁷⁾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를 정의하려고 비오 9세 복자께서 주교들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하셨던 사실이 이를 증언해 준다.³⁸⁾ 그리고 비오 12세께서 성모 승천 교리를 정의하실 때에도 이러한 관습을 따랐다.³⁹⁾

38.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의미 있고 일관되게 공동합의의 관습을 살릴 필요성은, 19세기에 이미 요한 아담 필러(1796-1838년), 안토니오 로스미니(1797-1855년), 존 헨리 뉴먼(1801-1890년)의 예언자적 목소리들 덕분에 제기되었다. 그들은 성경과 성전의 규범적 원천들을 상기시키면서, 성서학과 전례학 그리고 교부학 관련 움직임을 통하여 마련된 쇄신을 예고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삶 안에서 우선적이고 기초적 요소로서 여러 차원에서 질서 있는 공동합의 관습을 내포하는 친교의 차원을 강조하고, 주교와 교황의 특수한 직무와 내적으로 본질적 관계를 맺고 있는 신자들의 신앙 감각(sensus fidei fidelium)을 중시하였다. 다른 교회들과 교회적 공동체들과 교회 일치적 관계들 안에서 새로운 분위기, 그리고 공적 영역의 운영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것에 관하여 근대 의식 때문에 제기된 요구들에 대한 주의 깊은 식별 등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신비에서 그 내적으로 본질적인 공동합의적 차원에 대한 새롭고 심화된 경험과 제시를 촉구하게 되었다.

39. 아직 정확한 교회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지는 않은 새로운 제도가 19세기 후반부터 생겨나 점차 확립되던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한 나라의 주교들이 ‘주교회의’로 모이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정학적 조건들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하나의 특정한 지역과 관련하여 주교 직무에 대한 합의체적 해석이 일깨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이다. 같은 정신에 따라 로마에서는 20세기를 눈앞에 두고 레오 13세께서 소집하신 라틴 아메리카 전체 공의회가 거행된다. 여기에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관구장 대주교들이 참여하였다(1899년). 그동안 신학과 교회 경험의 제일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식이 자라나게 되었다. “교회’가 단순히 그 목자들과 동일시되지는 않는다. 교회 전체가 성령의 활동으로 성전의 주체이거나 ‘기관’이 된다. 그리고 평신도가 사도 신앙의 전수에 능동적 역할을 맡게 된다.”⁴⁰⁾

40.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전 수십 년 동안 성숙된 인식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전에 비추어 풍요로운 종합을 이룸으로써,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계획의 다시 취하여 이를 전체적인 ‘아조르나 멘토’(aggiornamento)의 전망 안에 통합시킨다.

‘교회 헌장’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친교로서 바라보는 전망을 제시하는데, 여기에서 공동합의성을 의미 있게 되살리려는 신학적 전제들이 발견된다. 곧 교회에 대한 신비적이고 성사적 개념, 하느님 백성이 천상 본향을 향하여 역사 안에서 순례한다는 특성, 그리고 하느님 백성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세례로 하느님 자녀로서 같은 품위를 지니고 같은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 주교직의 성사성과 로마 주교와 교계적 친교 안에서 단체성에 대한 가르침 등이 그것이다.

‘주교 교령’은 개별 교회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주교들이 사제단과 친교를 이루고 사제 원로 회의(senatus) 또는 사제 평의회 (consilium)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에게 맡겨진 교회에 대한 사목적 돌봄을 행할 것을 촉구하며, 각 교구에서 사제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목적 평의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한 지역 안에 있는 개별 교회들 사이의 친교 차원에서, 관구 시노드와 관구 공의회 존경할 만한 제도가 다시 활기 있게 실현되기를 기원하고, ‘주교회의’ 제도를 촉진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동방 교회 교령’에서는 동방 가톨릭 교회들과 관련하여 총대주교 제도와 그 공동합의적 형태에 대한 존중을 드러낸다.

41. 보편 교회 차원에서 공동합의적 관습을 되살리고자, 바오로 6세 복자께서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를 제정하신다. 그것은 “보편 교회를 위한 주교들의 상설 평의회”이고, 교황의 권한에 직접적이고 중개 없이 종속되며, 교황에게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는 임무”를 지니며 “로마 교황이 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의결 권한을

갖는다.”⁴¹⁾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공의회를 통하여 체험한 친교의 은혜가 하느님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도달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2000년 대희년을 계기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라 친교의 여러 구조들을 통하여 교회 신비의 본질 자체를 구현하고자 걸어온 여정에 대하여 평가하신다. 교황께서는 그동안 많은 것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남아 있는 과제들이 있음을 강조하신다. “이러한 친교 기구들의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교회가 직면해야 하는 문제들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⁴²⁾

가장 최근에 개최된 공의회 이후 지금까지 이미 오십 년 이상이 지나면서, 하느님 백성 안에서 교회의 친교적 본성에 대한 의식이 더욱 광범위하게 성숙되어 가고, 교구와 지역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공동합의성에 대한 긍정적 경험들이 생겨났다. 특히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정기 총회가 14회에 걸쳐 개최되고, 주교회의의 경험과 활동이 자리를 잡아 강화되며, 곳곳에서 시노드 회합들이 거행되었다. 그 밖에도 평의회들이 구성되어, 지역 또는 대륙 차원에서 사목 노선들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역 교회들과 주교들 사이에서 친교와 협력에 도움을 주었다.

제2장

공동합의성의 신학을 향하여

42. 성경과 성전의 가르침은 공동합의성이 교회의 구성적 차원임을 증언한다. 공동합의성을 통하여, 교회는 순례의 여정 중에 있는 하느님 백성,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회중으로서 드러나고 형성된다. 이 문헌의 제1장은 특히 예루살렘 공의회(사도 15,4-29 참조)의 모범적이며 규범적인 성격을 강조하였다. 이 회의는 신생 교회에 대한 결정적 도전 앞에서 공동체적이고 사도적인 식별을 행하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주는데, 이러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이루는 친교의 신비라는 교회의 본질 자체를 드러내는 표현이다.⁴³⁾ 공동합의성은 단순한 활동 절차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가고 활동하는 고유한 형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전망 안에서, 이 장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론에 비추어 공동합의성의 신학적 기초와 내용들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된다.

2.1. 공동합의성의 신학적 기초

43.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모인 백성**(de Trinitate plebs adunata)⁴⁴⁾이며, 사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⁴⁵⁾ 자신의 길을 정향하도록 하느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그 자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온 인류를 품고자 하시는 삼위일체 친교의 삶에 참여하게 된다.⁴⁶⁾ 친교의 선물과 임무 안에서 우리는 공동합의성의 원천과 형상 그리고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 교회가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길들을 식별하고 또 그러한 여정을 실행하는 데에 모든 교회 구성원이 책임과 질서 있게 참여함으로써, 친교는 하느님 백성의 고유한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modus vivendi et operandi)을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 사실 공동합의성을 실행하는 데에서, 하느님과 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일치하는 가운데 진실하게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실현되는 친교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인간의 소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⁴⁷⁾

44.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려고 사도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전달하셨다(요한 20,22 참조). 성령 강림 날에 하느님의 영이 세상 곳곳에서 와서 **케리그마**를 경청하고 받아들인 모든 이에게 부여함으로써, 모든 민족들이 유일한 하느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보편적 소명의 예표가 된다(사도 2,11 참조). 성령께서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살아 있는 성전인 교회의 친교와 사명에 생기와 형태를 주신다(요한 2,21; 1코린 2,1-11 참조).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되며’ 또한 ‘하나이고’ ‘사도로 부터 이어 오는’ 교회임을 믿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분리될 수 없다.”⁴⁸⁾

45. 교회가 **하나인** 것은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일치가 교회의 기원이고 모범이며 그 목적이기 때문이다(요한 17,21-22 참조).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 안에서 모든 사람을 화해시키고자 지상에서 순례하는 하느님의 백성이다(1코린 12,4 참조).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가 곧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업적이기 때문이다(2코린 13,13 참조). 신랑이 신부에게 자신을 내어 주듯 교회에게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교회는 거룩하게 되었고(에페 5,23 참조),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진 아버지의 사랑으로 생기를 얻는다(로마 5,5 참조). 교회 안에서 **성인들의 친교(communio sanctorum)**는 두 가지 의미로, 곧 **거룩한 것들(sancta)**의 공유와 **성화된 사람들(sancti)** 사이의 친교라는 의미로 실현된다.⁴⁹⁾ 그러므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은 일치와 구원의 보편적 성사로 세워지고 파견되어,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와 순교자들과 성인들의 전구로 동반을 받으며, 교회의 모든 구성원의 소명인 거룩함의 완성을 향하여 걸어간다.

교회가 **보편적인** 것은 신앙의 온전성과 전체성을 수호하기 때문이고(마태 16,16 참조), 또한 지상의 모든 민족들을 단 하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모으도록 파견되기 때문이다(마태 28,19 참조). 그리고 교회가 **사도적인** 것은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에페 2,20 참조), 사도들의 신앙을 충실하게 전달하며,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성화되고 다스려지기 때문이다(사도 20,19 참조).

46. 그리스도의 몸의 친교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 백성의 여정 안에서. 성령의 활동은 공동합의성의 원리이다. 성령께서는 삼위 일체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의 끈(nexus amoris)**으로서, 바로 그 사랑을 “성령의 친교”(κοινωνία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2코린 13,13)로 건설되는 교회에 전해 주신다. 세례 받은 모든 이 안에서, 유일하고 동일한 성령의 선물은 많은 다양한 형태들로 드러나게 되는데, 보편적 성화 소명,⁵⁰⁾ 모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는 것, 교계와 은사의 선물들의 풍요로움,⁵¹⁾ 각 지역 교회의 삶과 사명 등이 바로 그것이다.

47. 교회의 공동합의 여정은 성체성사로 형성되고 양육된다. 성체성사는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는 물론 신자 개개인에게도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의 중심이다.”⁵²⁾ 공동합의성의 원천과 절정은 전례 거행, 그중에서도 특히 성찬 모임에 대한 충만하고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⁵³⁾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이루는 친교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된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코린 10,17).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며 또 서로에게 함께 속한다는 것(1코린 12,12 참조)을 나타내고 가시적으로 실현한다. 성찬의 식탁 둘레에서 여러 지역 교회들이 유일한 교회의 일치 안에서 건설되고 또 서로 만나게 된다. 성찬의 모임은 **성인들의 친교(communio sanctorum)** 안에서 교회적 ‘우리’를 표현하고

실현하며, 신자들은 그 친교 안에서 다양한 하느님의 은총에 참여한다. 7세기 톨레도 공의회에서부터 1984년에 공포된 『주교 예절서』(Caerimoniale Episcoporum)까지, 『시노드 예식서』(Ordo ad Synodum)는 시노드 시작에 그리고 시노드의 중심으로서 성찬 거행을 규정하고 또 복음서를 안치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노드 모임의 전례적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48.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당신 백성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어, 그 백성이 당신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체성사로 그 백성을 기르시며, 공동합의적 친교 안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참으로 ‘공동합의적’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 아래 조화를 이루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⁵⁴⁾ 공동합의적 과정들과 사건들에는 시작과 전개와 끝맺음이 있지만, 공동합의성은 교회로서의 교회의 역사적 여정을 특수한 형태로 묘사하고, 교회 구조들에 활력을 주며, 그 사명의 방향을 결정한다. 교회의 신비 안에서 실현되는 하느님 구원 계획의 삼위일체적, 인간학적, 그리스도론적, 성령론적, 성체성사적 차원들은 여러 세기를 거치며 그 안에서 공동합의성이 부각되고 실행된 신학적 지평을 묘사한다.

2.2. 순례하며 선교하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 여정

49. 공동합의성은 교회의 ‘순례하는’ 특성을 드러낸다. 민족들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고 모인 하느님 백성의 표상(사도 2,1-9; 15,14 참조)은 그 사회적이고 역사적이며 선교적인 차원을 드러내는데, 이는 나그네(homo viator)로서 인간 존재의 조건과 소명에 상응한다.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길’이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하도록 비추어 주는 표상이다.⁵⁵⁾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에게 향하시는 하느님의 ‘길’이시며, 동시에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길’이시다.⁵⁶⁾ 우리 가운데 당신 천막을 치심으로써(요한 1,14 참조) 예수님 스스로 순례자가 되신 은총의 사건은 이제 교회의 공동합의 여정 안에서 여전히 계속된다.

50.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간다. 여행자이시고 길이시며 고향이신 그분께서는 당신 사랑의 성령을 보내 주시어(로마 5,5 참조), 우리가 그분 안에서 “더욱 뛰어난 길”(1코린 12,31)을 따를 수 있게 하신다.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1코린 11,26 참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름 받는다. 교회는 천상의 나라를 향한(필리 3,20 참조) 길을 따르는 백성이다(사도 9,2; 18,25; 19,9 참조). 공동합의성은 마지막 안식에 이르기까지 친교 안에서 걸어가는 교회 여정의 역사적 형태이다(히브 3,7-4,4 참조).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앞으로 올 도성”(히브 13,14)을 향한 주님 백성의 순례를 인도하고 안내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방인과 나그네”(1베드 2,11)로 살아가며,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은혜와 책임을 부여받는다.

51. 하느님의 백성은 시간의 종말까지(마태 28,20 참조) 그리고 땅 끝까지(사도 1,8 참조) 걸어가는 여정 중에 있다. 교회는 여러 지역 교회들 안에서 공간을 통과하여 살아가며, 예수님의 파스카로부터 그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통과하여 걸어간다. 교회는 하느님과 결정적인 결합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류 가족의 일치라는 종말론적 목표가 이미 현존하고 작용하는 단 하나의 역사적 주체가 된다.⁵⁷⁾ 이러한 여정에서 공동합의적 형태는 순례하는 각각의 개별 교회들 안에서 친교,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교회들 사이의 친교의 실천을 표현하고 촉진한다.

52. 교회의 공동합의적 차원은, 여러 지역 교회들이 그들 서로 간에, 그리고 로마 교회와 관계 안에서, 통시적 관점(고대성, *antiquitas*)에서나 공시적 관점(보편성, *universitas*)에서 모두 살아 있는 성전을 통하여 신앙의 친교를 이룸을 의미한다. 신경과 지역 시노드와 관구 시노드, 그리고 특별하고 보편적 형태로 보편 공의회 결정들이 전해지고 수용되는 것은 **어디에서나, 항상, 그리고 모든 이를 통하여 교회가 고백하는**(*quod ubique, quod semper, quod ab omnibus creditum est*)⁵⁸⁾ 신앙 안에서 친교를 규범적으로 표현하고 보증해 주었다.

53. 공동합의성은 교회가 사명에 봉사하고자 삶으로 살아 낸 것이다 **“순례하는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다”**(*Ecclesia peregrinans natura sua missionaria est.*)⁵⁹⁾ 그 교회는 복음화를 위하여 존재한다.⁶⁰⁾ 하나님의 백성 전체는 복음 선포의 주체이다.⁶¹⁾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세례 받은 모든 이는 선교의 주역이 되도록 부름을 받는다. 우리 모두는 선교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복음화의 길들을 식별하려는, 공동합의적인 상승 작용으로 교회의 삶 안에 현존하는 직무와 카리스마들을 활성화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2.3. 친교의 교회론의 표현인 공동합의성

5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은 친교의 교회론의 전망 안에서 공동합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필수적 원리들을 제시한다. 그 앞부분 장들의 순서는 교회의 자기의식에서 터득한 중요한 내용들을 표현한다. 그 순서, 곧 “교회의 신비”(1장), “하나님의 백성”(2장), “교회의 위계 조직”(3장)이라는 순서는, 전체가 부분보다 우선하고 목적이 수단보다 우선한다는 논리 안에서, 교계 제도는 하나님 백성에 봉사하려는 것이고, 이는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강조한다.

55. 공동합의성은 교회 전체와 교회 안의 모든 이가 주체임을 표현한다. 신앙인들은 ‘쉬노도이’(σύνδοσι) 곧 여정의 동반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이들로써,⁶²⁾ 그리고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받는 이들로써⁶³⁾ 능동적 주체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는다. 공동합의적인 삶은 서로 친교로 결합된 자유롭고 서로 다른 주체들로 구성된 하나의 교회를 증언한다. 그 교회는 공동체적인 단 하나의 주체로서 역동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모퉁잇돌이신 그리스도와 기둥인 사도들을 기초로 하여, 수없이 많은 살아 있는 돌들로 이루어진 “영적 집”(1베드 2,5)이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에페 2,22)로서 지어진다.

56. 모든 신자는 세례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예언자, 사제, 왕의 직분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의 구성원으로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는다.⁶⁴⁾ 주교들은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위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를 가르치고 성화하고 다스리는 데에서 그들의 특별한 사도적 권위를 행사한다.

성령의 도유는 신자들의 **신앙 감각**(*sensus fidei*)으로 나타난다.⁶⁵⁾ “세례 받은 모든 사람 안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성화하는 힘이 작용하여 복음화를 재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도유에 힘입어 거룩해집니다. 이는 **믿음에서**(*in credendo*) **오류가 없게** 합니다. 비록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여도, 하나님 백성은 믿을 때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진리 안에서 이끄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인류에 대한 당신 사랑의 신비의 일부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 전체에게 **신앙의 본능**, 곧 **신앙 감각**(*sensus fidei*)을 심어 주시어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의 것인지를 식별하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의

현존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적인 실재와 어떤 공본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확히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도 그러한 실재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지혜도 주십니다.”⁶⁶⁾ 그러한 공본성은 “**교회와 더불어 느끼기**(sentire cum ecclesia), 곧 교회와 조화를 이루며 느끼고 체험하며 지각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는 신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순례의 여정에 있는 모든 하느님 백성이 일치룰 이루도록 한다. 또한 그것은 그들의 함께 걷기’에 열쇠가 된다.”⁶⁷⁾

57.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론적 전망을 받아들이면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공동합의적 교회의 모습을 ‘역삼각형’으로 그려 내신다. 그 역삼각형은 하느님의 백성과 주교단 그리고 특수한 일치 직무를 지닌 베드로의 후계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 안에서, 정점은 밑변의 아래쪽에 있는 것이다.

“교회의 구성적 차원인 공동합의성은 우리에게 교계 직무 자체를 이해하는 가장 적합한 틀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정점에 사도단을 두셨고, 그 안에서 베드로 사도는 ‘반석’(마태 16,18 참조)이며 믿음 안에서 형제들의 힘을 ‘복돋아’ 주어야 하는(루카 22,32 참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마치 역삼각형처럼, 그 정점이 밑변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은 ‘봉사자’(ministri)라고 불립니다. 이 단어의 본디 의미에 따라, 그들은 모든 이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⁶⁸⁾

2.4. 보편적 친교의 역동성 안에 있는 공동합의성

58. 공동합의성은 친교인 교회의 보편성(catholicity)을 드러내는 살아 있는 표현이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몸과 결합된 머리로서 현존하시고(에페 1,22-23 참조), 그래서 교회는 그분께 구원의 충만한 수단들을 받는다. 또한 교회는 풍요로운 다수의 문화적 표현들을 지닌 인류 가족 전체를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그리고 성령의 일치 안에 모으도록 모든 사람에게 파견되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공동합의의 여정은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이 충만한 신앙을 공유하는 역동적 형태를 보여 주고, 또한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에게 그 신앙이 전달되게 한다는 이중적 의미에서 보편성을 표현하고 촉진한다.

59.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교회는 지역적인 것 안에서 보편적인 것을 실현하고, 또한 보편적인 것 안에서 지역적인 것을 실현한다. 어떤 장소에 있는 교회의 특별성은 보편 교회(universal Church)의 품 안에서 실현되고, 보편 교회는 지역 교회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 상호 간의 친교와 그들과 로마 교회 사이의 친교 안에서 드러나고 실현된다. “개별 교회가 고의로 보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려 한다면 하느님의 계획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보편**(toto orbe diffusa) 교회도 엄밀하게 개별 교회들을 통하여 몸과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현실에서 유리된 추상적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의 이 양극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에만 우리는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들이 맺는 이러한 풍요로운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⁶⁹⁾

60. 이 양극의 본질적 상관관계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 안에서 보편적인(universal) 것과 지역적인(local) 것 사이의 상호 내주(內住)로 표현될 수 있다. 보편적인 것으로 교회 안에서 다양성은 단순한 공존이 아니라 서로 간의 상관관계와 상호 의존 속에 이루어지는 상호 관통성, 곧 교회론적 **페리코레스시스**(pericoresis)를 의미하며, 바로 여기에서 삼위일체적 친교의 교회론적 표상을 볼 수 있다. 유일한 보편 교회 안에서 교회들 서로 간의

친교는,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 아래**(cum Petro et sub Petro) 일치되어 모여 있는 주교직의 합의체적인 ‘우리’라는 표현을 교회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61. 지역 교회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 안에서 유일한 하느님의 백성을 고유한 방식으로 실현하는 공동체적 주체들이며, “긴밀한 친교의 유대”⁷⁰⁾를 촉진하려는 상호 교환을 통하여 선물들을 함께 나눈다. 각자의 교회적 규율, 전례 예법, 신학적 유산, 영적 선물들과 교회법적 규범들을 지닌 “지역 교회들의 다양성은 갈릴 수 없는 교회의 보편성을 더욱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⁷¹⁾ **일치의 중심**(centrum unitatis)인 베드로의 직무는 “정당한 다양성을 보호하고 또 동시에 개별 요소들이 일치에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일치에 이바지하도록 감독한다.”⁷²⁾ 베드로의 직무는 교회의 일치에 봉사하고 각 지역 교회들의 특수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합의성은, 보편 교회 안에서 함께 가야 할 길과 이와 구별되게 각 개별 교회들 안에서 걸어야 할 길들을 식별하면서, 교회의 보편성을 촉진하고자 우리가 따라야 할 여정이 무엇인지를 잘 묘사한다.

2.5. 사도적 친교의 전승(traditio) 안의 공동합의성

62. 교회는 세 가지 의미에서 사도적이다. 첫째, 사도들을 기초로 세워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점에서(에페 2,23 참조), 둘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전한다는 점에서(사도 2,42; 2티모 1,13-14 참조), 셋째,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교회의 목자들인 주교단을 통하여 계속해서 사도들의 지도를 받는다는 점에서(사도 20,28 참조), 교회는 사도적이다.⁷³⁾ 여기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교회의 공동합의적 삶, 다른 한편으로 주교들 사이에 그리고 그들이 로마 주교와 맺고 있는 합의체적이고 교계적인 친교 안에서 주교들의 직무를 통하여 실현되는 사도적 직무,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63. ‘교회 현장’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확고한 **단체**(collegium) 또는 **집단**(coetus)의 형태로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선택하신 베드로를 으뜸으로 삼으셨다.”⁷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주교직의 계승이 그들에게 성품성사의 충만함을 부여하고 주교단의 단장과 단원들과 합의체적이고 교계적 친교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주교 축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단언한다.⁷⁵⁾ 따라서 주교 직무는 사도 직무에 상응하여,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합의체적이고 교계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선언한다. 그리고 주교직의 성사성과 주교들의 단체성 사이의 유대를 보여줌으로써, 주교 직무를 그 성사적 근원에서 분리시키고 성전에 증언된 합의체적 차원을 약화시키는 해석을 극복한다.⁷⁶⁾ 이로써 ‘교회 현장’은 친교와 단체성의 교회론 안에, “주교들의 일치는 물론 신자 대중이 이루는 일치의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⁷⁷⁾인 로마 주교에 관한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교리를 통합한다.

64.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에 대한 교리, 그리고 교황과 교계적 친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교직의 성사적인 단체성의 교리를 토대로, 우리는 공동합의성의 신학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교회의 공동합의적 차원은 세례 받은 모든 이가 능동적 주체라는 특성을 표현하고, 동시에 로마 주교와 합의체적이고 교계적인 친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교 직무의 특수한 역할을 또한 표현한다.

이러한 교회론적 시각은 ‘모든 사람’과 ‘몇몇 사람’과 ‘한 사람’ 사이의 공동합의적 친교가 전개되는 것을 촉진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서로 다른 차원과 서로 다른 형태들 안에서, 그리고 개별 교회들 차원과 지역

수준으로 묶인 개별 교회들의 차원과 보편 교회 차원에서, 공동합의성은 **신자들 전체**(universitas fidelium)에 의한 **신앙 감각**의 행사[‘모든 사람’], 각각의 사제단과 함께하는 주교들의 단체 곧 주교단의 지도 직무[‘몇몇 사람’], 그리고 주교와 교황의 일치(consensus)의 직무[‘한 사람’]를 내포한다. 이렇게 하여, 공동합의적 역동성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 전체를 포함하는 공동체적 측면, 주교 직무의 행사와 관련된 합의체적 차원, 그리고 로마 교황의 수위권 직무가 서로 결합된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신자들과 목자들 사이의 단 **하나의 일치**(singularis conspiratio)를 촉진하며,⁷⁸⁾ 이는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일치**(conspiratio)의 표상이 된다. 그래서 교회는 “그 자신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세기에 걸쳐 하느님 진리의 충만을 향하여 꾸준히 나아간다.”⁷⁹⁾

65. 교회의 공동합의적 삶의 쇄신을 위해서는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자문을 구하는 절차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신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관행은 교회 생활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로마법의 원리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모든 사람이 관련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논의하고 승인해야 한다**(Quod omnes tangit, ab omnibus tractari et approbari debet.). 그래서 교회 생활의 세 가지 영역들, 곧 신앙과 성사와 통치에서, 전통은 회합과 동의의 구체적인 제도를 교계 구조와 결합시켰고, 이는 ‘사도 실행’ 또는 ‘사도전승’으로 이해되었다.”⁸⁰⁾ 이러한 원리가 교회론적 차원에서 공의회주의 또는 정치적 차원에서 의회주의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적 친교의 품 안에서 공동합의성을 생각하게 하고 실행하도록 도와준다.

66. 공동합의성의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전망 안에는 **신자들의 친교**(communio fidelium), **주교들의 친교**(communio episcoporum), **교회들의 친교**(communio ecclesiarum) 사이의 상호 내포가 있다. 공동합의성 개념은 단체성 개념보다 더 광범위한데, 교회 안의 모든 이의 참여, 그리고 모든 교회의 참여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단체성은 주교들의 단체 안에, 곧 **베드로와 함께**(cum Petro) 그리고 **베드로 아래**(sub Petro) 있는 주교단을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의 친교가 고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합의성 개념은 단체성 개념을 내포한다. 그리고 그 반대도 성립되는데, 이 두 실재가 서로 구별되는 것이면서도 서로를 지탱해 주고 서로를 보증해 주기 때문이다. 주교직의 성사성과 단체성에 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은 공동합의성에 대한 올바르게 통합적인 신학을 위한 근본적 신학적 전제가 된다.

2.6. 교회의 합의체적 삶 안에서 참여와 권위

67. 공동합의적인 교회는 참여적이고 공동 책임을 갖는 교회이다. 공동합의성을 실행하는 데에서, 교회는 각자의 소명에 따른 모든 이의 참여가, 그리스도께서 교황을 머리로 하는 주교단에 부여 하신 권위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모든 신자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선물들을 서로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자격과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목자들의 권위는 몸 전체의 건설을 위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로서, 백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백성을 대표하는 역할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

68. 첫째는 교회 안의 모든 이에게서 이루어지는 **자문**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것이다. 의결 투표와 건의 투표를 구별한다고 해서, 여러 시노드 회합들과 여러 평의회들에서 표현된 의견과 투표 결과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건의 투표**(votum tantum consultivum)라는 표현은, 만일 그것을 여러 형태로 표현되는 사회법의 정신(mens)에 따라서만 이해한다면, 위에 언급한 자리에서 제기된 평가와 제안들의 무게를 일컫기에는 부적절하게 된다.⁸¹⁾

시노드 회합들에서 표현되는 자문은 사회법의 이해와는 다르게 평가된다. 시노드 회합들에 참여하는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느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바에 공동체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신앙의 눈으로 시대의 표징들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공동합의적인 교회에서는, 구성원들이 가지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다양성 안에서, 공동체 전체가 하느님의 뜻에 더 부합하는 사목적 결정들을 내리고자 기도하고 경청하고 분석하고 대화하고 식별하며 조언하도록 소집된다. 그러므로 목자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에 이르려고 주의 깊게 신자들의 **원의**(vota)를 경청해야 한다. 교회법은, 특별한 경우에는 목자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에 따라 여러 의견들을 구하고 얻은 다음에만 비로소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규정한다.⁸²⁾

69. 두 번째 설명은 **목자들이 가진 고유한 다스림의 기능**에 대한 것이다.⁸³⁾ 공동체의 목자들은 유일하신 목자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부름받는다. 이러한 목자와 그 공동체는 서로 외면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적인 친교 안에서 역할이 구분되는 것이다. 시노드, 회합, 평의회는 합법적인 목자들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공동합의적 과정은 교계적으로 구조화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교구 안에서, 식별과 자문과 협력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decision-making)과 사목적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decision-taking)을 구별해야 한다. 이처럼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도성과 보편성의 보증인 주교의 권위에 속한다. 결정에 도달하려는 작업은 공동합의적인 과제이고,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는 직무적 책임인 것이다. 공동체의 공동합의적 식별로써 주교가 사도적 권위를 개인적 차원과 합의체적 차원에서 더 잘 행사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곧 공동합의성의 적절한 실행이라 할 수 있다.

70. 요약하면, 제1장과 제2장에 언급된 규범적 원천들과 신학적 토대들에 비추어, 교회의 구성적 차원인 공동합의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개략해 볼 수 있다.

가. 무엇보다 먼저, 공동합의성은 교회의 삶과 사명을 특징 짓는 **고유한 방식**(lo stile)이다. 이는 함께 걸어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려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님께서 소집하신 하느님의 백성이 회중으로 모이는 것이 곧 교회의 본질임을 드러내 준다. 공동합의성은 교회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과 작용 방식 안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한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modus vivendi et operandi)은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성찬을 거행하는 것, 친교의 형제애를 이루는 것, 그리고 하느님 백성 전체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직무와 역할을 구별하며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하고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나. 교회의 공동합의적 본성은 제도적 측면에서 유비적으로 실현되는데, 그 실현의 여러 차원에는 개별 교회 차원, 지역 교회 차원, 보편 교회 차원이 있다. 공동합의성은, 이렇듯 다양한 차원의 유비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신학적 그리고 교회법적 의미에서 가장 특수하고 한정된 의미에서 교회 구조와 교회 절차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와 절차들은,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그 이끄심에 따라 걸어가야 할 방향을 찾아내도록 부름 받은 교회의 권위 있는 식별을 위한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공동합의성은, 관할 권위로 그리고 교회 규율로 정해진 특정 절차에 따라서 교회가 소집되는 **공동합의적 사건들**이 정확히 일어나는 것을 지칭한다. 그 사건들은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참여하여, 로마 주교와 합의체적이고 교계적인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의 주재 아래, 개별 교회와 지역 교회와 보편 교회 차원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교회의 여정과 특정 문제들을 식별하고, 교회의 복음화 사명을 완수하려는 결정과 지침들을 취하려는 목적이다.

제3장 공동합의성의 실현: 공동합의적 사건들의 주체, 구조, 절차

71.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론적 전망 안에서 공동합의성을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그 실현의 구체적 방식들에 대하여 성찰하게 된다. 그것은 대략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교회법 규정에 따라 마련한 것을 논평하면서 그 의미와 가능성을 드러내고 새로운 자극을 더하며, 동시에 그 적절한 전개를 위한 신학적 전망들을 식별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적 소명에서 시작하여, 개별 교회와 지역 교회와 보편 교회의 차원에서 공동합의적 구조들을 기술하고, 이어서 공동합의적 절차와 사건들 안에 함축된 다양한 주체들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다.

3.1.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적 소명

72. 하느님의 백성 전체는 본디 그 공동합의적 소명으로 부름을 받는다. 모든 신자가 지니고 있는 **신앙 감각**, 공동합의성을 실현하는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식별, 그리고 일치와 다스림의 사목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권위 사이의 순환적 관계가 공동합의성의 역동성을 나타낸다. 그러한 순환적 관계는 세례의 품위와 모든 이의 공동 책임성을 촉진시키고, 성령께서 하느님의 백성 안에 부어 주신 은사들의 현존을 존중하며, 로마 주교와 합의체적이고 교계적인 친교를 이루는 목자들의 특수한 직무를 인정한다. 이 순환적 관계는 또한 공동합의의 절차와 사건들이 **신앙의 유산**(*depositum fidei*)에 충실하며 성령께 귀를 기울여, 교회 사명의 쇄신을 위하여 전개되도록 보증해 준다.

73. 이러한 전망 안에서, 평신도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그들은 하느님 백성의 절대 다수이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의 삶과 사명, 대중 신심, 그리고 사목 전반의 다양한 표현 형태들에 참여하는 데에서 배울 것이 많으며, 문화와 사회생활의 다양한 영역들 안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고유한 능력들도 또한 배울 점이 많다.⁸⁴⁾

그러므로 평신도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은 공동합의 구조들의 틀 안에서 식별 절차를 시작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양성 부족과 평신도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정된 자리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장애물들, 그리고 평신도들을 교회 생활의 주변부에 묶어 두려는 성직 중심적 사고방식에 따른 장애물들은 모두 극복되어야 한다.⁸⁵⁾ 이를 위해서는 성숙한 교회적 의식을 기르는 데에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의식은 제도적 차원에서 규칙적 공동합의의 실천으로 옮겨져야만 한다.

74. 나아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르침을 토대로, 교계적 선물과 은사적 선물의 공동 본질성이라는 원리를 분명하게 존중해야 한다.⁸⁶⁾ 이 원리는 교회의 공동합의적 삶 안에 봉헌 생활 공동체들과 교회 운동들과 새로운

공동체들이 참여해야 함을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흔히 교회의 삶과 사명을 쇄신하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은사의 충동으로 솟아나는 이 모든 실재는, 친교의 삶을 공동합의적으로 엮어 내는 의미 깊은 체험들, 그들 내부에서 생겨나는 공동체적 식별의 역동성, 그리고 복음화의 새로운 길들을 찾아내려는 자극들을 제공해 준다. 어떤 경우에 이 실재들은, 친교의 교회론 전망 안에서 다양한 교회적 성소들이 통합되는 예를 보여 주기도 한다.

75. 교회의 공동합의적 소명 안에서, 신학의 은사는 하느님 말씀의 경청, 지혜롭고 학문적이며 예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이해, 시대의 표징들에 대한 복음적 식별, 복음을 선포하려는 사회와 문화와 대화를 통하여 특별한 봉사를 행하도록 부름받는다. 충실한 백성의 신앙 체험과 진리에 대한 묵상, 그리고 목자들의 설교와 더불어, 신학은 복음이 더욱 깊이 관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⁸⁷⁾ 더욱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들이 그렇듯이 신학자의 직무도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이고 단체적이다.”⁸⁸⁾ 그러므로 교회의 공동합의성은, 신학자들이 서로 함께 경청하고 대화하고 식별하며 많고도 다양한 요구와 기여들을 통합하는 능력을 육성하여, 공동합의적인 형태로 신학을 하계끔 요구한다.

76. 교회의 공동합의적 차원은, 모든 교회적 결정에 영감을 불어넣는 친교의 역동성을 드러낼 수 있는 참여와 식별의 절차들이 실천에 옮겨지고 다스려지는 것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공동합의적 삶은 제도적 구조들과 절차들을 통하여 표현되는데, 이러한 구조와 절차들로 준비와 거행과 수용의 여러 단계들을 거치면서, 마침내 공동합의적 사건들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합의적 사건들 안에서, 교회는 자신의 구성적 요소인 공동합의성을 실현하는 다양한 차원들에 맞추어 소집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위해서는 성령께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것 과 교회의 교리에 대한 충실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이가 질서 있게 참여하고, 각자의 선물들을 교환하며, 시대의 표징들을 정확하게 읽어 내고, 사명을 효과적으로 기획할 수 있게 하는 더욱 적합한 도구들을 찾아내어 실행에 옮기려는 창조성이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교회의 공동합의적 차원의 실현에서 고대의 교회 규정의 유산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자극으로 생겨난 공동합의적 구조들을 함께 통합하고 현대화해야 하며, 또한 새로운 구조들의 창조에 열려 있어야 한다.⁸⁹⁾

3.2. 개별 교회 안의 공동합의성

77. 공동합의성의 실행에서, 그 첫 단계는 개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개별 교회 안에서는, “주교가 자기 사제단과 성직자들과 더불어 주재하는 전례 거행들, 특히 한 제대에서 하나의 기도로 거행되는 동일한 성찬례에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 전체가 충만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에 교회의 탁월한 현현이 이루어진다.”⁹⁰⁾

개별 교회 안에서, 상호 인격적인 소통과 상징적 표현들을 형성하는 역사, 언어, 문화의 유대들은 그 교회의 특징적인 얼굴을 나타내고, 그 구체적 삶 안에서 공동합의적 방식의 실행을 촉진시키며, 효과적인 선교적 회심을 위한 기초가 된다. 개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교적 증언은 특수한 인간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들 안에 구현되며, 선교 사명을 위한 공동합의적 구조들을 분명하게 활성화시킨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강조하셨듯이, “그러한 조직들이 ‘기저’와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들로 부터 그리고 매일의 문제들로부터 출발할 때에만 공동합의적인 교회가 형태를 취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⁹¹⁾

3.2.1. 교구 시노드와 동방 교회의 교구 회의

78. 라틴 예법 교회들의 교구 시노드와 동방 예법 교회들의 교구 회의는⁹²⁾ “교구의 참여 구조들의 정점”이며, 그 가운데 “일차적 중요성을 갖는 자리”⁹³⁾이다. 이 교구 시노드와 회의들은, 한 개별 교회 안에 사는 하느님의 백성이 사목적 도전들을 식별하고, 사명에서 걸어가야 할 길을 함께 찾으며, 성령께 귀를 기울여 적절한 결정들을 내리도록 능동적으로 협력하고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교의 주재로 소집해 모이는 은총의 사건이 된다.

79. 교구 시노드와 동방 교회 교구 회의는 동시에 “통치 행위이자 친교의 모임”⁹⁴⁾이기 때문에, 하느님 백성의 교회적 공동 책임 의식을 새롭게 하고 심화시키며, ‘모든 사람’과 ‘몇몇 사람’과 ‘한 사람’의 논리에 따라 모든 구성원이 사명에 참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참여는 시노드 준비 과정에서 의견을 물음으로써 실행되어야 한다. 그 목적은 개별 교회 안에서 하느님 백성의 표현들인 모든 목소리를 접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출에 따라 또는 주교의 임명으로 직무상 회의와 시노드에 참석하는 이들은 교구 시노드 또는 동방의 교구 회의를 거행하는 임무가 맡겨진 ‘몇몇 사람’이다. 시노드에 참석하는 이들은 그들 전체로서 개별 교회의 의미 있고 균형 잡힌 표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소명, 직무, 은사, 능력, 사회 계층과 지리적 출신 등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개별 교회의 시노드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양 떼의 목자인 주교는⁹⁵⁾ 그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위로써 일치와 지도의 직무를 시노드에서 행사하도록 부름받는다.

3.2.2. 개별 교회 안에서 공동합의적 삶에 봉사하는 다른 구조들

80. 개별 교회 안에는 일상적으로 교구를 이끄는 데에서 주교의 직무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조하는 여러 기관들인 교구청, 참사회, 의전 사제단, 재무 평의회가 영구적인 형태로 마련되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지침에 따라 사제 평의회와 교구 사목 평의회도 제정되었다.⁹⁶⁾ 이들은 친교와 공동합의성을 실행하고 촉진하는 향구한 자리들이다.

81. 사제 평의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구를 통치하는 주교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제단을 대표하는 사제들의 평의회 또는 원로원”으로 제시된다. 주교는 “사목 활동의 필요와 교구의 선익과 관련되는 일에 대하여”⁹⁷⁾ 사제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며 그들과 대화해야 한다. 이 평의회는 특수한 방식으로 개별 교회의 복합적인 공동합의적 역동성 안에 자리하여, 그 정신으로 고무되고 그 방식에 따라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

교구 사목 평의회는 주교와 그의 사제단이 추진하는 사목 전체에 자격을 갖춘 유능한 기여를 하는 역할이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주교의 특별한 권위 아래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⁹⁸⁾ 그 본성과 회합의 주기, 그리고 그 절차와 임무의 목표로, 교구 사목 평의회는 개별 교회 안에서 공동합의성을 실현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상임 기구로 제시된다.

82. 여러 개별 교회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실현을 추진하려고, 친교와 공동 책임성을 표현하고 촉진하며 통합적인 사목을 하게 된다. 이러한 회합들은 교구 시노드를 실현하는 틀이요 통상적인 준비 역할을 하게 되며, 그러한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의 공동합의적 여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3.2.3. 본당 생활 안에서 공동합의성

83. 본당은 교회의 신비를 가시적이고 즉각적이며 일상적인 형태 안에서 실현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본당에서 우리는 형제적 관계 망 안에서 주님의 제자들로 살기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 관계들을 통하여, 부르심과 세대와 은사와 직무 그리고 능력의 다양성 안에서 친교를 체험하고, 각자의 고유한 기여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확고하게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봉사를 수행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84. 본당 안에는 공동합의적 특성을 지닌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본당 사목 평의회와 재무 평의회이다. 여기에서 평신도들은 자문과 사목 계획에 참여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로서는 본당 사목 평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데에 그치는 교회법 규범을 개정하여 로마교구의 마지막 시노드에서 하였던 것처럼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⁹⁹⁾ 또한 개별 교회 안에서 공동합의적 역동성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게 하려면, 교구 사목 평의회와 본당 사목 평의회가 조화로운 협력 속에 일하고 또 그들이 적절하게 존중되는 것이 필요하다.¹⁰⁰⁾

3.3. 지역 내 개별 교회들 사이의 공동합의성

85. 지역 차원에서 공동합의성의 실행은 같은 지역 안에, 곧 초세기 교회에서 주로 하던 것처럼 한 관구나 한 나라 또는 한 대륙 안에, 또는 그들의 일부 안에 있는 개별 교회들의 모임을 통해서 체험되는 것이다. 이들은 “형제애의 친교로” 또 “세계 선교를 향한 열정으로, 개별 교회의 선의와 공동선을 증진하려고” “유기적으로 결합된”¹⁰¹⁾ 집단들이다. 역사적 기원의 공통성과 문화적 동질성과 선교에서 마주하는 유사한 도전들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맥락들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고유한 형식으로 현존하게 해야 한다. 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동합의성의 실행은, 개별 교회들의 공통된 여정을 추진하고, 그들의 영적 그리고 제도적 유대들을 강화하며, 선물들의 상호 교환을 촉진하여, 그들의 사목적 선택들을 조율하게 한다.¹⁰²⁾ 특히 공동합의적 식별은, “문화를 복음화하는 새로운 과정들을 돕기 위한”¹⁰³⁾ 공통된 선택에 영감을 불어넣어 격려할 수 있는 것이다.

86. 초세기부터, 서방처럼 동방에서도 어떤 사도 또는 그의 협력자가 설립한 교회들은 그 관구 또는 지역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주교가 각각 관구장 대주교(Metropolita) 또는 총대주교(Patriarcha)로 인정되기에 이른다. 이에 수반되어 공동합의적인 특수한 구조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구조들 안에서 개별 교회들의 총대주교, 관구장 대주교, 주교들은 공동합의성을 촉진하도록 명시적인 요청을 받았다.¹⁰⁴⁾ 그러한 임무는 지역 차원에서도 표현되어야 하는 주교들의 단체성에 대한 의식이 성숙해짐으로써 더욱더 확고해지게 된다.

87. 라틴 예법의 가톨릭 교회에는 지역 차원의 공동합의적 구조들이 있는데, 관구 특별 공의회와 관구 일반 공의회, 주교회의, 그리고 대륙 차원에서 구성되는 여러 주교회의의 모임들이 있다. 동방 예법 가톨릭 교회에서는,

총대주교구 시노드와 관구 시노드, 여러 동방 자치(sui iuris) 교회들의 교계 책임자들의 회합,¹⁰⁵⁾ 동방 가톨릭 총대주교들의 공의회가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러한 교회 구조들을 단체성의 중간적인 단계들이라고 정의하시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러한 조직들이 주교들의 단체성의 정신을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¹⁰⁶⁾ 기원하시고 상기하셨다.

3.3.1. 개별 공의회

88. 지역 차원에서 거행되는 개별 공의회들은, 개별 교회들의 모임 안에서 공동합의성을 실행하는 특수한 구조가 된다.¹⁰⁷⁾ 이 공의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식별과 결정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기에, 이는 주교들 사이의 합의체적 친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의 모든 구성원과 이루는 친교”를 나타내고, 따라서 “교회들 사이의 친교”를 드러내며, “특히 신앙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적절한 자리”¹⁰⁸⁾가 된다. 교회법은 교리와 통치에 있어 개별 공의회에서 행사되는 공동합의적 식별과 관련한 범위를 재확인하는 한편, 그 사목적 성격을 강조한다.¹⁰⁹⁾

3.3.2. 주교회의

89. 한 나라 또는 한 지역 범위 안에서 주교회의들은 민족주의 국가들이 확립되면서 생겨난 근래의 제도이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친교의 교회론의 전망 안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였다.¹¹⁰⁾ 주교 회의들은 주교들의 단체성을 드러내면서, 해당 국가들 안에서 사명 수행을 목적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교회들의 공동선을 위하여 주교들 간에 협력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교리 영역에서도 주교회의의 속성들을 연구하도록 권고하심으로써, 그 교회론적 중요성을 환기시켰다.¹¹¹⁾ 이러한 심화는 주교회의들의 교회론적 본질과 교회법적 지위, 그리고 주교들의 단체성 행사와 지역 차원에서 공동합의적 삶의 더욱 분명한 실현과 관련하여 주교회의가 지니는 구체적 속성들을 고찰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전망 안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숙해진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동방 교회들의 전통들과 신학과 교회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¹¹²⁾

90.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적 여정을 촉진하려는 주교회의의 중요성은 “개별 주교들은 자기 교회를 대표한다.”¹¹³⁾는 점에 있다. 주교회의에서 나오는 사목적 지침들의 작성 과정에서 신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다양한 교회적 체험들을 받아들이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평신도들이 전문가로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참여 방법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공동합의성 실현에 기여하고자, 이러한 주교들의 단체성 구조들의 가치를 향상시키게 된다. 국가 차원에서 공동합의적인 과정을 작동시키려면, 주교회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교회적 회합들이 중요한데, 이탈리아 교회에서 10년마다 개최되는 회합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¹¹⁴⁾

91. 보편 교회 차원에서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회합들을 준비하는 더욱 상세한 절차는, 그 준비 단계에서 평신도들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함으로써, 주교회의들이 하느님 백성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합의적 과정에 더욱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해 준다.

3.3.3. 동방 가톨릭 교회들의 총대주교들

92. 동방 가톨릭 교회들에서, 총대주교구는 동일한 신학적, 전례적, 영적, 교회법적 유산을 갖고 있는 한 관구 또는 지역 내의 교회들 사이의 친교를 표현하는 공동합의적 구조이다.¹¹⁵⁾ 총대주교구 시노드에서, 단체성과 공동합의성의 행사는 총대주교와 각각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다른 주교들 사이의 조화를 요구한다. 총대주교직은 로마 교회의 주교와 보편 교회와 친교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의 동일한 총대주교구 교회의 품 안에서 신자들의 친교를 통하여 다양성 안에서 일치와 보편성을 촉진한다.

3.3.4. 주교회의와 동방 교회 총대주교구들의 지역 평의회

93. 국가 차원에서 주교회의들의 탄생을 이끌었던 같은 이유들 때문에, 더욱 광범위한 지역과 대륙 차원에서 여러 주교회의들로 이루어진 평의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동방 예법의 가톨릭 교회들의 경우에는, 자치(sui iuris) 교회들의 교계 책임자들의 회합과 동방 가톨릭 교회들의 총대주교들의 평의회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구조들은, 세계화의 도전을 고려하며 여러 맥락들에서 복음의 토착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또한 “다양한 모습을 한 교회의 아름다움”¹¹⁶⁾을 드러내는 데에 이바지한다. 이 구조들의 교회론적 의미와 교회법적 지위는, 이들이 “각기 광범위한 사회 문화적 지역 경계 안에서”¹¹⁷⁾ 거기에 속하는 개별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삶과 문화의 고유한 조건들로부터 출발하여 공동합의적 참여의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3.4. 보편 교회 안의 공동합의성

94. 보편 교회 차원에서, 교회의 구성적 차원인 공동합의성은 신자들의 동의(consensus fidelium), 주교들의 단체성, 로마 주교의 수위권 사이의 역동적 순환성 안에서 표현된다. 이러한 기초를 토대로, 교회는 신앙의 유산(depositum fidei)에 충실하면서도 성령의 목소리에 창조적으로 개방되어, 때때로 구체적인 상황과 도전들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함께 하느님의 백성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에게 귀를 기울여, 진리의 식별과 선교의 여정에서 의견이 함께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95. 이러한 교회론적 맥락에서, 보편적 차원에서 공동합의성을 실행하려는 로마 주교의 특별한 직무가 부각된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저는, 공동합의적인 교회 안에서는 베드로의 수위권 행사도 더욱 빛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황은 혼자 또 교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례 받은 이들 가운데 있는 세례 받은 이로서, 그리고 주교단 안에서 주교들 가운데의 주교로서 존재하며, 그와 동시에,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사랑 안에서 모든 교회를 주재하는 로마 교회를 이끌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¹¹⁸⁾

96. 주교단은 보편 교회 차원에서 공동합의성을 행사하는 데에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직무를 수행한다. 실상 주교단은 내재적으로 자신 안에 그 단장인 로마 주교를 포함하고, 로마 주교와 더불어 교계적 친교 안에서 행동한다는 점에서,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¹¹⁹⁾이다.

3.4.1. 보편 공의회

97. 보편 공의회는 보편 교회 차원에서 주교들의 단체성과 교회의 공동합의성이 표현되는 가장 충만하고 장엄한 특별 사건이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를 **지극히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a Synodus)**¹²⁰⁾라고 일컫는다. 이 보편 공의회를 통해서, 단장인 로마 주교와 결합된 주교단의 교회 전체를 위한 권위 행사가 표현된다.¹²¹⁾ 바오로 6세 복자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을 공포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교부들과 하나되어(una cum Patribus)**라는 표현은, 주교단과, 보편 교회에 대한 사목 직무의 주체로서 그 주교단을 주재하는 교황 사이의 긴밀한 친교를 드러낸다.

98. 보편 공의회는 개별 교회들의 친교이기 때문에 하나이고 보편된 교회를 대표하는 특별한 형태가 된다. 왜냐하면 “모든 주교는 교황과 더불어 [...] 온 교회를 대표하기”¹²²⁾ 때문이다. 보편 공의회 안에서 그 머리인 로마 주교와 함께하는 주교단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 전체가 대표되는 것은, 주교의 서품이 그 수품자를 성사적 차원에서 사도적 계승과 주교단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주교에게 하나의 개별 교회의 대표직을 부여한다는 사실에서 도출된다. 그러므로 보편 공의회는 보편 교회의 여정을 식별하기 위하여 **하나로(in unum)** 소집된 개별 교회 목자들을 통하여 그 개별 교회들 사이의 친교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주교들이 교황과 친교를 이루는 가운데 교회의 공동합의성을 최고도로 실현하는 것이다.

3.4.2.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99. 바오로 6세 복자께서 상시적인 공동합의 구조로서 제정하신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가장 소중한 유산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구성하는 주교들은 가톨릭 주교직 전체를 대표하며,¹²³⁾ 그래서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주교단이 교황과 교계적 친교를 이루면서 전 세계 교회를 돌보는 데에 참여함을 드러낸다.¹²⁴⁾ 그것은 “온전히 공동합의적인 하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교들의 단체성의 표현”¹²⁵⁾이라고 일컬어진다.

100. 모든 시노드 회합은 연속적인 단계들에 따라 전개된다. 거기에는 준비와 거행 그리고 실행의 단계가 있다. 교회 역사는, 목자들과 사도들의 의견을 구하려는 자문 과정의 중요성을 증언한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를 실현하시고자, 개별 교회 차원에서 자문 과정들을 실행함으로써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sensus fidei)**을 더 폭넓고 주의 깊게 경청하도록 하는 주요 지침을 제시하셨다. 이를 통하여, 세계주교대의원회의가 “교회 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진행된 경청의 역동성이 수렴되는 지점”¹²⁶⁾이 되게끔 하려는 것이었다.

하느님 백성에게 의견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주교들의 교회적 대표성과 로마 주교의 주재를 통하여,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교회 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공동합의성을 실현하고 촉진하는 특권적 구조가 된다. 자문을 통하여 공동합의 과정은 하느님 백성 안에서 그 출발점을 갖게 되며, 토착화된 실행 과정을 통하여 또한 하느님 백성 안에서 그 종착점에 이르게 된다.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주교단이 전 세계 교회에 대한 사목적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는 아니다. 교회법에서는 이렇게 강조한다. “주교단이 보편 교회에 대한 그의 임무를 합의체적으로 수행하는 양식을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촉진하는 것은 교황의 소임이다.”¹²⁷⁾

3.4.3. 수위권의 공동합의적 행사를 위한 구조들

101. 처음에는 로마 교회의 신부들과 부제들, 그리고 로마 주변 교구 주교들로 구성되었던 추기경단은 역사적으로 로마 주교의 고유한 직무 행사에서 그를 돕는 공동합의적 평의회가 된다. 현재의 형태에서 추기경단은 보편 교회의 얼굴을 반영하며, 보편 교회를 위한 교황의 직무를 돕고, 이를 위하여 추기경 회의로 소집된다. 이러한 기능은 로마 주교를 선출하려는 콘클라베가 소집될 때에 특별한 형태로 행사된다.

102. 보편 교회를 위한 교황의 직무를 상시적으로 돕고자 교황청이 구성된다.¹²⁸⁾ 교황청은 그 본질상 주교들의 단체성과 교회의 공동합의성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친교의 교회론에 따른 교황청의 개혁을 요청하면서, 공동합의성을 증진시키기에 적합한 몇 가지 요소들을 강조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모든 교회의 생각과 열망과 요구를 교황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교구 주교들을 포함시킬 것, 그리고 “평신도들이 교회 일에서 자기에 알맞은 역할을 다하도록”¹²⁹⁾ 평신도들에게 자문을 구할 것 등이 있다.

4장

쇄신된 공동합의성을 향한 회심

103. 공동합의성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라고 약속하신 주 예수님과 일치하여 그분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삶과 복음화 사명을 고무하려는 것이다. 교회의 공동합의적 쇠신은 물론 공동합의적 구조들이 활력을 되찾게 함으로써 이루어지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역사 안에서 걸어가는 당신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신 하느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표현된다. 이 장은, 그러한 응답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수한 요소들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곧 친교 영성의 형성, 경청과 대화와 공동체적 식별의 실천, 교회 일치 여정의 중요성, 그리고 형제적이고 공동합의적이며 포괄적인 사회 기풍(ethos)을 건설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언적 봉사(diakonia)의 중요성 등이 그것이다.

4.1. 교회의 삶과 사명의 공동합의적 쇠신을 위하여

104. “교회의 모든 쇠신은 본질적으로 교회 소명에 대한 충실성의 증대에 있다.”¹³⁰⁾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실현하면서 끊임없는 회심으로 부름받으며, 그 회심은 또한 늘 자신의 소명에 더욱 충실하려는 사고방식과 태도와 관습과 구조의 쇠신을 포함하는 ‘사목적이고 선교적 쇠신’이기도 하다.¹³¹⁾ 공동합의적 의식으로 형성된 교회적 사고방식은, 세례 받은 모든 이가 제자이며 선교사로서 자격과 부름을 받게 하는 그 은총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한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날 교회 생활을 위한 사목적 회심의 큰 도전은, “평신도를 의사 결정에서 제외시키는 지나친 성직주의”¹³²⁾의 유혹을 언제나 피하면서, 평신도를 성직자처럼 만들거나 성직자들을 세속화하지 않고, 각자의 선물과 역할에서 출발하여, 복음화를 위한 증언에서 모든 이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105. 공동합의성의 실현을 위한 사목적 회심은, 지금도 교회 문화 안에 흔히 남아 있는 몇 가지 패러다임들을 극복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친교의 교회론으로 쇠신된 교회 이해를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예로는, 사명의 책임이 목자들의 직무에만 집중되는 것, 봉헌 생활과 카리스마적 은사들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것, 평신도들과 특히 여성 평신도들이 그 권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특수하고 유능한 기여의 가치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106. 친교의 전망과 공동합의성 실현이라는 전망 안에서, 사목 행위의 지침으로 몇 가지 기본 노선들을 제시할 수 있다.

가. 개별 교회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차원에서, ‘한 사람’과 ‘몇몇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역동적 순환성에 따라, 목자들의 직무, 평신도의 참여와 공동 책임성, 카리스마적 선물들로부터 오는 자극들 사이의 순환성을 활성화시킬 것.

나. 목자들의 단체성 행사와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살아가는 공동합의성을, 전 세계 교회 안에서 개별 교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친교의 표현으로서 통합해 낼 것.

다. 로마 주교로서 행사하는 베드로의 직무, 곧 일치의 직무와 전 세계 교회를 이끄는 직무가, 모든 개별 교회와의 친교, 그리고 주교들의 합의체적 직무와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적 여정과의 상승적 협력(synergy) 속에서 수행되게 할 것.

라. 각각의 전통들이 화해를 이루는, 다양성 안에서 충만한 일치를 향하여 걸어가려는 불가역적인 노력 안에서, 가톨릭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교회적 공동체들을 향한 개방성을 지닐 것.

마. 다른 종교적 신앙과 신념을 지닌 남녀들과 함께 사회적 봉사과 건설적 대화를 함으로써 만남의 문화를 함께 실현할 것.

4.2. 친교의 영성과 공동합의적 삶의 양성

107.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¹³³⁾가 되도록 성부께서 소집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기풍은 친교의 영성을 향한 인격적 회심으로 발산되고 길러진다.¹³⁴⁾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 기풍을 성령의 선물이며 또한 서약으로 받아들여도록 초대되는데. 그 서약의 실행은 성령의 움직임에 순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세례 때에 받았고 성체성사로 완성되는 은총을 친교 안에서 살도록 교육되기 위해서이다. 개인주의적으로 이해된 ‘나’에서 교회적인 ‘우리’로 옮겨 가는 파스카적 전이에서, 각각의 ‘나’는 그리스도를 입어(갈라 2,20 참조)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느님 백성의 유일한 사명을 수행하는 책임 있고 능동적인 주체로서 살아가며 걸어간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가 “친교의 원천이며 친교의 학교”¹³⁵⁾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게 된다. 마음과 정신의 회심 없이는, 그리고 서로 함께 수락하고 경청하려는 수덕적 훈련 없이는, 친교의 외적 도구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마음도 얼굴도 없는 단순한 가면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분명한 참여 규칙을 정하여

법의 지혜가 교회의 교계 구조를 밝혀 주고 독단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모든 유혹을 물리친다면, 친교의 영성은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의 존엄과 책임에 따라 온전히 신뢰와 개방 정신을 촉진함으로써 제도적 실재에 혼을 불어넣습니다.”¹³⁶⁾

108.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신앙 감각**에 따라 살아가고 이를 성숙시키고자 요구되는 것과 똑같은 자세들이, 공동합의적 여정에서 그 신앙 감각을 실행하기 위해서도 요구된다. 이것은 공동합의적 정신을 기르는 데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복음의 요구들과 인간적 덕목들이 잘 존중되지도 않고 적절하게 교육되지도 않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¹³⁷⁾ 그러한 자세들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으로는, 성체성사와 화해 성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생활 참여, 하느님의 말씀과 대화하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려는 말씀에 대한 경청의 실행, 신앙과 도덕에 관한 가르침에서 교도권을 따름,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며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비롯한 형제들에게 파견되었다는 의식 등이 있다. 이들은 **‘교회와 함께 느끼기’(sentire cum Ecclesia)**라는 정식에 포함되는 태도들이다. 교회와 함께 느낀다는 것은 “교회와 조화를 이루어 느끼고 체험하며 지각하는 것”으로서, 이는 “순례적 여정에 있는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이 일치룰 이루도록” 하며, “그들의 ‘함께 걸어가기’에 열쇠가 된다.”¹³⁸⁾ 구체적으로, “일반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교육하는 곳이든, 제단의 봉사자들이나 봉헌 생활자, 사목 활동가를 양성하는 곳이든, 가정과 공동체를 육성하는 곳이든” 그 어디에서나, 친교의 영성이 “교육적 원리”¹³⁹⁾로서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109. 성찬 모임은 친교의 영성의 원천이며 모형(paradigm)이다. 거기에서 **공동합의적 정서(affectus synodalis)**를 형성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특별한 요소들이 표현된다.

가. **삼위일체를 부름.** 성찬 모임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부르는 것에서 시작된다. 성부께서 소집하신 교회는 성찬에 힘입어,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성사가 된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20). 세 신적 위격의 친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일치는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 결합”¹⁴⁰⁾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께 받은 각자의 선물과 은사들을 실행함으로써 드러난다.

나. **화해.** 성찬 모임은 하느님과 화해 그리고 형제들과 화해를 통하여 친교를 이루게 한다. **죄의 고백(confessio peccati)**은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을 기념하며 죄로 말미암은 분열의 길이 아니라 일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마태 5,23-24). 공동합의적 사건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용서를 청하는 것을 내포한다. 화해는 새로운 복음화를 삶으로 살아 내려는 여정이다.

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경청.** 성찬 모임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써 길을 밝히려는 것이다. 성사들 특히 성체성사를 거행하면서, 그리고 형제들 특히 가난한 이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성경 특히 복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법을 배운다. 사목 직무를 수행하며 성찬의 빵과 더불어 말씀의 빵을 쪼개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공동체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그 공동체의 삶을 알아야만 한다. 성찬 전례의 대화적 구조는 공동체적 식별의 모형이 된다. 곧 서로가 서로에게 경청하기에 앞서, 제자들은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해야만 한다.

라. **친교.** 성찬은 “친교를 **낳고** 친교를 **강화**합니다.”¹⁴¹⁾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서 생겨난 친교에 많은 남녀의 사람들이 참여한다. 그들은 세례 받은 이로서 동일한 품위를 지니고, 성부께 다양한 소명들을 받아 책임있게 이를 수행하는데, 이 소명들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성품성사로부터, 또한 성령의 특별한 선물들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품위와 소명을 통하여 그들은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다수성이 일치성 안으로 풍요롭고 자유롭게 수렴되는 것이, 바로 공동합의적 사건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마. **선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Ite, missa est.). 성찬에서 실현된 친교는 선교를 촉구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기쁜 체험을 모든 이와 나누도록 부름받는다. 공동합의적인 모든 사건은 교회가 진영 밖으로 나가(히브 13,13 참조),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하게끔 재촉한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길에서 한 마음과 한 뜻”¹⁴²⁾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공동체의 일치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1코린 15,28)이 되시는 그 종말론적 목표를 향하여 시간의 오솔길들을 따라 인도해 주는 이 내적인 목적(télos)이 없다면, 참된 것이 아니다. 언제나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하느님을 향하여 모두 함께 걸어가고자, 모든 이를 향하여 “**밖으로 나가며**” 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진정 공동합의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4.3. 공동체적 식별을 위한 경청과 대화

110. 교회의 공동합의적 삶은, 교회의 모든 지체 사이에서 신앙과 삶과 선교적 사명 사이의 효과적인 소통이 실제로 이루어짐으로써 실현된다. 그러한 소통 안에서 기도으로써 나아가고, 성사들로 양육되며, 서로 간 그리고 모든 이를 향한 사랑에서 꽃피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기쁨과 시련에 참여함으로써 성장하는, 바로 그 **성인들의 친교(communio sanctorum)**가 드러나는 것이다. 공동합의의 여정에서, 소통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묵시 2,29)을 알아차리려면 하느님 말씀에 공동체적으로 귀를 기울임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 “공동합의적인 교회는 경청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을 가진 백성, 주교단, 로마 주교, 그 각자는 다른 이들을 경청하고, 모든 이는 성령을 경청합니다.”¹⁴³⁾

111. 공동합의적 대화는 말할 때에나 들을 때에나 용기를 내포한다. 이것은 말하는 한 사람이 다른 이들을 능가하려고 하거나 무딘 논거들로써 다른 이들의 입장을 반박하려고 하는 토론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안에서 성령께서 공동체적 식별을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 알려 주시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그것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견해들 가운데 같은 성령께서 “공동선을 위하여”(1코린 12,7) 드러내 보여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도록 열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일치가 갈등보다 우월하다.”는 기준은 특히 대화를 실행하고, 의견과 경험의 다양성을 다루는 데에 적용 가능하다. 이 기준은 또한 “역사를 일구어 가는 방식, 그리고 갈등과 긴장과 대립이 새로운 삶을 낳는 다양한 형태의 일치에 도달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을 배우는 데에도 특별히 적용되며, “**차이 속에서 친교**”¹⁴⁴⁾를 증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실상 대화는, 해당 주제에 대한 논의를 비추어 주는 새로운 전망과 관점들을

얻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것은 “관계에 바탕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이기에, 공유된 인식의 형태를 취하게 되며, 이는 타자의 눈을 통하여 보는 시각이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공유하는 시각”¹⁴⁵⁾이다. 바오로 6세 복자에게 있어, 참된 대화는 영성적 만남으로서,¹⁴⁶⁾ 사랑, 존중, 신뢰, 신중함 등과 같은 몇몇 특별한 자세들을 필요로 하며,¹⁴⁷⁾ 이는 “우정, 나아가 섬김의 분위기 안에서”¹⁴⁸⁾ 이루어져야 한다. 베네딕토 16세께서 강조하셨듯이, 진리는 “말씀(logos)이기에 대화(dia-logos)를 생겨나게 하고, 거기서 소통과 친교가”¹⁴⁹⁾ 이루어진다.

112. 공동합의적 대화에서 필수적인 태도는 겸손이다. 겸손은 각자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순종하게 한다.¹⁵⁰⁾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뜻(φρόνησις)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ἀγάπη)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는”(필리 2,2) 친교의 삶과 관련하여, 겸손의 의미와 그 역동성을 보여 준다. 그는 공동체 삶의 기초를 위협하는 두 가지 유혹을 지적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기심(ἐριθεία)과 허영심(κενοδοξία)이다(필리 2,3-4 참조). 반면에,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는 겸손(ταπεινοφροσύνη)이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또한 공동의 선과 이익을 첫자리에 두어야 한다(필리 2,3-4 참조). 바오로는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을 상기시키는데, 우리는 신앙으로 그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필리 2,5). 제자들의 뜻(φρόνησις)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성부께 받는 뜻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필리 2,7-10 참조) 성부께 순종하는 철저한 형태이며, 제자들에게는 스승이며 주님이신 분을 따라 겸허함 속에 하느님의 뜻을 함께 느끼고 생각하고 식별하라는 요청이다.

113. 식별은 공동합의적인 과정과 그 사건의 핵심에 위치한다. 교회의 공동합의적 삶에서는 언제나 그러하였던 것이다. 친교의 교회론과 거기에서 나오는 고유한 영성과 실천은, 사명 안에 하느님 백성 전체를 참여시키면서, “오늘날 과거의 그 어떤 때보다도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식별의 원리와 방법들을 교육하는 것을 필요하게끔”¹⁵¹⁾ 한다. 그것은 교회가 성령의 인도 아래 시대의 표징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실현되고¹⁵²⁾ 역사의 모든 때(kairós)에 실현되고자 하는¹⁵³⁾ 하느님의 계획에 봉사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여정을 찾아내고 걸어가는 것이다. 공동체적 식별은, 하느님께서 특정한 역사적 상황 안에서 들려주시는 부르심을 발견하게 한다.¹⁵⁴⁾

114. 공동체적 식별은, 하느님의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명시적 또는 침묵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들려오는 ‘성령의 탄식’(로마 8,26 참조)에 주의 깊고 용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내포한다. “하느님과 함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기까지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뜻을 백성에게서 인지할 때까지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¹⁵⁵⁾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느님 말씀의 관상자이며 또한 하느님 백성의 관상자’¹⁵⁶⁾이어야만 한다. 식별은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에 필요한 기도, 묵상, 성찰, 연구의 공간 안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식별은, 형제자매들과 진솔하고 평온하고 객관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체험들과 각 공동체와 각 상황의 실제 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고 복음을 선포하고자 선물들을 교환하고 모든 힘을 모으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식별은 또한 모든 감정과 생각을 정화시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령에 대한 열림을 약화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로부터 복음적 자유를 찾으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4.4. 공동합의성과 교회 일치에의 여정

115.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이고 보편적인 교회가 존재하는데(subsistit in),¹⁵⁷⁾ 이 가톨릭 교회가 세례 받은 모든 이와 여러 이유로 결합되어 있으며,¹⁵⁸⁾ 또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갈라진] 교회들과 [교회적] 공동체들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수단의 힘이 가톨릭 교회에 맡겨진 충분한 은총과 진리 자체에서 나온다.”¹⁵⁹⁾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 안에서 충분하고 가시적인 일치를 향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 오직 그분만이 역사를 거치면서 당신 몸이 가해진 상처들을 낫게 하실 수 있고, 성령을 주심으로써 사랑 안에서 진리에 따라 차이점들을 화해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교회 일치에의 노력은 하느님 백성 전체와 연관되는 여정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 사이를 서로 갈라 놓았던 차이들의 장벽을 허무려는, 그리고 우리를 일치시키는 많은 풍요로움이 유일한 세례로 유일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며 향유하려는 마음의 회심과 서로 간의 개방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회 일치에의 노력에는, 기도에서부터 하느님 말씀의 경청과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사랑의 체험에 이르기까지, 또한 복음에 대한 증언에서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봉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정의롭고 연대적인 사회적 삶을 위한 노력에서 평화와 공동선을 위한 투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포함된다.

116. 지난 여러 해 동안의 교회 일치 대화에서, 공동합의성이 교회의 본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계시적 차원에 속하는 동시에, 다양한 표현을 지닌 교회의 단일성을 이루는 구성적 차원임을 인정하는 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쁘게 기억해야 한다. 이는 **친교(koinonia)**로서의 교회라는 개념에 대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견 수렴은 각 지역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지역 교회와 다른 교회들 사이의 관계에서, 고유한 공동합의적 구조와 절차들을 통하여 실현된 것이다.

가톨릭 교회와 동방 교회 사이의 대화 안에 이루어진 근래 『키에티 문헌』(*Documento di Chieti*)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적 친교가¹⁶⁰⁾ 제일천년기에 동방과 서방에서 “수위권과 뗄 수 없이 연결된 공동합의성의 구조들”¹⁶¹⁾을 발전시켰고, 그 신학적 또는 교회법적 유산이 “제삼천년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준점이 된다.”¹⁶²⁾라고 말한다.

세계교회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산하 신앙직제위원회(Commission of Faith and Order)의 문헌 『교회, 공동의 전망을 향하여』(*The Church: Towards a Common Vision*)는 “성령의 인도 아래 모든 교회는 교회 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곧 개별(local) 교회와 지역(regional) 교회와 보편(universal) 교회의 차원 모두, 공동합의적/공의회적(conciliar)이다. 공동합의성 또는 공의회성(conciliarity)은 하느님의 삼위일체적 삶의 신비를 반영하며, 교회의 구조들은 친교로서의 공동체의 삶을 실현하려고 이러한 공동합의성/공의회성을 표현한다.”¹⁶³⁾

117. 이러한 교회관에 동의하는 것은,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신학적 문제들에 평온함과 객관성을 지니고서 관심을 집중시키게 해 준다. 그 해결해야 할 문제들 가운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세례 받은 모든 이 안에 **신앙 감각**을 불러일으키시고 길러 주심으로써 그들이 공동합의적 삶에 참여하고 그에 따라 사명의 식별에서 자격과 책임을 지니게 된다는 것과, 성사적으로 부여된 특수한 은사에서 나오는 목자들의 고유한 권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둘째는, 지역 교회의 목자들과 로마 주교의 친교를 통하여 표현되는,

지역 교회들과 보편 교회 사이의 친교에 대한 해석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 안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형태들의 합법적 다수성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고 영구적인 동일성과 보편적인 단일성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짓는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합의적 삶을 실현하고 그 신학적 의미를 심화하는 것은 교회 일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서 대단히 중요한 도전이며 기회가 된다. **신앙의 유산**에 대한 창조적 충실성 안에서, 그리고 **진리들의 위계(hierarchia veritatum)**¹⁶⁴⁾의 기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준수 안에서, 실상 공동합의성의 지평은, 일치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서로를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는 ‘선물들의 교환’이 얼마나 희망찬 것임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치란, 교회 얼굴의 아름다움 안에서 빛나는 그리스도 신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이 화해 속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5. 공동합의성과 사회적 봉사

118. 하느님의 백성은 역사 안에서 모든 이와 복음의 누룩과 소금과 빛을 함께 나누고자 걸어간다. 그러므로 “복음화에는 대화의 길도 포함”¹⁶⁵⁾되는데, 이는 진리를 찾으며 정의를 건설하려고 투신하는 다른 종교, 신념, 문화를 가진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며, 우리 곁에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알아차리도록 모든 이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 주려는 대화의 길을 의미한다. 만남과 대화와 협력의 선도는 이 공동의 순례에서 귀중한 단계들로서 신뢰를 얻게 되며,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적 여정은 화합주의(irenicism)나 타협이 아닌, 모든 이와 대화를 실천하는 데에 필요한 **기풍(ethos)**을 배우는 삶의 학교로서 드러난다. 또한 민족들 사이에서 상호 의존성을 의식하게 되면서 세상을 공동의 집으로 생각하게 되는 오늘날, 교회는 교회를 특징짓는 보편성과 교회 자신의 표현인 공동합의성, 이 두 가지야말로 다양성 안에서 일치 그리고 자유 안에서 친교를 촉진하는 누룩임을 드러내도록 부름받고 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적 삶과 회심, 만남, 연대성, 존경, 대화, 포용, 통합, 감사와 무상성 등의 문화를 추진하는 데에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헌이다.

119. 교회의 공동합의적 삶은 특히 정의와 연대성과 평화의 표징 안에서 민족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삶을 진흥시키는 데에 봉사한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별 인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들도 구원하신다.”¹⁶⁶⁾ 권위주의적이고 기술 지배적인 시류의 위험 속에서 민주주의적 참여 절차가 구조적인 위기를 맞고 그 원리들과 영감을 주는 가치들이 불신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대화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평화와 정의를 건설하는 공통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일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과 땅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라는 명령은 하느님 백성의 우선적 임무이며 모든 사회적 행위의 기준이 된다.¹⁶⁷⁾ 이제 사회의 선택과 계획 수립에서, 가난한 이들이 특전적 위치와 역할을 지니고, 부의 보편적 사용과 연대성의 우선성이 강조되며,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볼 의무가 절박하게 요청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성령의 담대함(parrhesia)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

120.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신다. “함께 걸어가는 것은 교회의 **구성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눈과 마음으로 실재를 해석하게 해 주는 **암호**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이 상처 입은 시대에 생명의 봉사자가 되려는 **조건**입니다. 공동합의적인 호흡과 발걸음은 우리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우리의 결정들을 고무하는 친교의 역동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지평 안에서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사목을 혁신하여, 그것을 오늘의 세계에서 교회의 사명에 적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지금까지 해 온 과정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담대함(parrhesia)**을 지니고서 단호하게 그것을 계속하며, 이 시대의 복잡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¹⁶⁸⁾

121. 공동합의의 여정에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요청되는 성령 안에서의 **담대함(parrhesia)**은 신뢰와 솔직함, 그리고 “하느님의 넓은 지평 안으로 들어가, 세상 안에 일치의 성사가 있으며 그래서 인류는 추방당하고 길을 잃을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¹⁶⁹⁾하려는 용기이다. 공동합의성에 대한 생생하고 항구적인 체험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의 원천이고, 새로운 삶의 누룩이며, 선교 임무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도전의 발판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성령께서 오시도록 간청하셨고(사도 1,14 참조), 그리하여 성령 강림 날 선교의 폭발을 가능하게 하셨다.”¹⁷⁰⁾ 그 마리아께서 이제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의 순례를 동반하시고, 그 목적지를 가리켜 보여 주시며, 복음화의 이 새로운 단계에서 아름답고도 부드럽고도 강한 방식을 가르쳐 주시기를 희망한다.

1. 프란치스코,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2015.10.7.,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AAS) 107(2015), 1139면.

2. 위와 같음.

3. G. Lampe, *A Patristic Greek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68, 1334-1335면 참조.

4. “Εκκλησία συνόδου ἐστὶν ὄνομα”(Exp. in Psalm., 149, 1: 『그리스 교부 총서』[Patrologia Graeca: PG] 55, 493); 참조: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AAS 107(2015), 1142면.

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 1965.11.18., 1항;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1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글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제3판) 참조.

6. 교회법 제439조 1항; 제440조 1항.

7. 교회법 제337조 1항.

8. 교회법 제342조.

9. 교회법 제460조.

10. 『동방 교회 법전』(1990년)은 한편으로는 보편 공의회(동방 교회법 제50조), 다른 한편으로 주교 시노드(동방

교회법 제46조 1항), 총대주교구 교회 주교들의 시노드(동방 교회법 제102조), 상급 대주교좌 교회 주교들의 시노드(동방 교회법 제152조), 관구 시노드(동방 교회법 제133조 1항), 총대주교구 본부(curia)의 상임 시노드(동방 교회법 제114조 1항)를 언급한다.

11. 교황청 신앙교리성, 「친교로서 이해되는 교회의 일부 측면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Communio Notio*, 1992.5.28.)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1964.11.21., 4.8.13-15.18-21.24-25항; 계시 헌장 10항; 현대 세계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1965.12.7., 32항;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 1964.11.21., 2-4.14- 15.17-19.22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참조)와 1985년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2차 임시 총회 「최종 보고서」(II, C, 1 참조)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친교’(koinonia)의 개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친교의 개념은 교회 신비의 핵심을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말이며, 분명 가톨릭 교회론의 쇄신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 교회 헌장 1항 참조.

13.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새 천년기」(*Novo Millennio Ineunte*), 2001.1.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제1판), 44항, AAS 93(2001), 298면 참조.

14.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AAS 107(2015), 1141면.

15.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Sensus Fidei in the Life of the Church*), 2014.6.10., 91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54호(201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77-243면 참조.

16.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11.2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제2판), 120항, AAS 105(2013), 1070면 참조.

17.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Ad Ephesios*), IX, 2, 『사도 교부 전집』(*Patres Apostolici*), F.X. Funk편, I, 튀빙겐, 1901, 220면 참조.

18.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IV, Funk편, I, 216면 참조.

19.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스미르나인들에게 보낸 편지」(*Ad Smyrnaeos*), VIII, 1-2, Funk편, I, 282면;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V, 1, Funk편, I, 216면; III, 1 216면; 「트랄레스인들에게 보낸 편지」(*Ad Trallianos*), IX, 1, Funk편, I, 250면 참조.

20. 「트랄레스인들에게 보낸 편지」, III, 1, Funk편, I, 244면 참조.

21. 「열두 사도의 가르침」(*Didaché*), IX, 4, Funk편, I, 22면. 이러한 관습은 뒤에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 참조: 「스미르나인들에게 보낸 편지」, VIII, 1-2, Funk편, I, 282면; 성 치프리아노, 「서간집」(*Epistula*), 69, 5, 『라틴 교회 저술가 전집』(*Corpus Scriptorum Ecclesiasticorum Latinorum: CSEL*), III, 2, 720면; 「가톨릭 교회의 일치에 관하여」(*De Catholicae Ecclesiae Unitate*), 23, CSEL III, 1, 230-231면;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요한 복음 강해」(*In Ioannem homiliae*), 46, 『그리스 교부 총서』(*Patrologia Graeca: PG*), 59, 260; 성 아우구스티노, 「강론집」(*Sermo*), 272, 『라틴 교부 총서』(*Patrologia Latina: PL*), 38, 1247-1248.

22. 성 치프리아노, 「서간집」, 14, 4, CSEL III, 2, 512면.

23. 성 치프리아노, 「가톨릭 교회의 일치에 관하여」, 5, CSEL III, 1, 214면.

24. 『세계 공의회 결의문집』(*Conciliorum Oecumenicorum Decreta: COD*), 볼로냐, 2002, 8-9면 참조.

25. COD 32면 참조.

26. COD 99-100면 참조.
27. 『사도들의 법규』(*Canoni degli Aposoli*), Mansi, *Sacrorum Conciliorum Nova et Amplissima Collectio*, I, 35.
28. 2세기에 이미,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Ad Romanos*), IV, 3, Funk편, I, 256-258면; 성 이레네오, 「이단 반박」(*Adversus Haereses*), III, 3, 2, 『그리스도교 원전』(*Sources Chrétiennes: Sch*), 211, 32면 참조.
29. 로마의 성 클레멘스, *1 Clementis*, V, 4-5, Funk편, I, 104-106면 참조.
30. 세르디카 시노드(343년), 법규 제3·5조,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선언 편람: 신경 편람』(*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DH*), 133-134항 참조.
31. 제2차 니케아 세계 공의회, *DH* 602항 참조.
32. 아프리카에서는 로마 원로원과 도시 공의회들(*Concilia municipalia*)의 관습이 나타난다(예를 들어, 256년의 카르타고 공의회 참조). 이탈리아에서는 제국 통치 관습에서 알려진 절차상의 방법들을 사용한다(381년의 아퀼레이아 공의회 참조). 비시고트 왕국에서나 프랑스 왕국에서는 시노드들의 전개가 그곳에서 알려져 있던 정치적 관습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7세기의 *Ordo de Celebrando Concilio* 참조).
33. 지역 시노드에서 평신도들의 참석에 관하여, 오리게네스, *Dialogus cum Heraclius*, IV, 24, *SCh* 67, 62면); 북아프리카의 관습에 관하여, 성 치프리아노, 「서간집」, 17, 3, *CSEL* III, 2, 522면; 「서간집」, 19, 2 *CSEL* III, 2, 525-526면; 「서간집」, 30, 5, *CSEL* III, 2, 552-553면 참조. 256년의 카르타고 시노드에 대해서는, “백성 대부분이 참석하였다.”(*praesente etiam plebis maxima parte.*)라고 말한다.: *Sententiae Episcoporum Numero LXXXVII*, *CSEL* III, 1, 435-436면. 「서간집」, 17, 3에서는 치프리아노 성인이 다른 주교들(*coepiscopi*)의 동의의 특별한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백성(*plebs*) 전체의 동의로 결정을 내리려 하였음을 증언한다.
34. 탁발 수도회의 수도원들은 관구들로 모여져 총장에게 종속되며, 총장의 통치권은 수도회의 모든 회원에게 해당된다. 또한 수도회의 장상들, 곧 총장과 관구장 그리고 개별 수도원의 장상들은 일정한 임기로 수도회 구성원들의 대의원들에게서 선출되며, 그들의 권위적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회(*Capitulum*) 또는 평의회(*Consilium*)의 보조를 받는다.
35.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영원한 목자」(*Pastor Aeternus*), *DH* 3059항; 참조: 교회 헌장 18항.
36. 「영원한 목자」, *DH* 3074항; 교회 헌장 25항.
37.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의 2014년 문헌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 40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기에서 배제되는 것은, 그러한 동의가, 정의가 내려지기 전이든 후든 그 정의의 권위적 지위에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38. 복자 비오 9세, 회칙 *Ubiprimus Nullis*, 1849.2.2., 6항 참조.
39. 비오 12세, 회칙 *Deiparae Virginis Mariae*, 1946.5.1., *AAS* 42(1950), 782-783면 참조.
40.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 41항.
41. 복자 바오로 6세, 자의 교서 「사도적 염려」(*Apostolica Sollicitudo*), 1965.9.15., 『교회법 해설』, 3권, 부록 3, 수정 번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제2판), *AAS* 57(1965), 776면.
42. 「새 천년기」, 44항: *AAS* 93(2001), 298면.
43. 베네딕토 16세, 제5차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주교회의 개막 미사 강론, 「아파레시다 문헌」(*Aparecida*), 2008.5.13., *AAS* 99(2007), 435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 ‘방법’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이루는 친교의 신비라는 교회의 본질 자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44. 교회 헌장 2-4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Ad Gentes*), 1965.12.7., 2-4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참조.

45. 교회 헌장 51항; 계시 헌장 2항; 전례 헌장 6항.

46. 교회 헌장 4.8.13-15.18.21.24-25항; 계시 헌장 10항; 사목 헌장 32항; 일치 교령 2-4.14-15.17-18.22항 참조.

47. 사목 헌장 24항 참조.

48. 『가톨릭 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제2판), 750항.

49. 교회 헌장 49항 참조(역주: 이에 대한 좀 더 명시적인 인용 근거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948항을 볼 것).

50. 교회 헌장 39-42항 참조.

51. 교회 헌장 4.12항; 참조: 교황청 신앙교리성,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낸 서한 *Iuvenescit Ecclesia*, 2016.5.15., 12-18항.

52. 『로마 미사 경본』(*Missale Romanum*),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Institutio Generalis Missalis Romani*), 196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제1판), 16항.

53. 전례 헌장 10.14항 참조.

54. 요제프 라칭거(J. Ratzinger), “Le funzioni sinodali della Chiesa: l’importanza della comunione tra i Vescovi”,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1996.1.24., 4면.

55.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Summa Theologiae*), 제1부, 제2문; 제3부, 서문 참조.

56.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인간의 구원자」(*Redemptor Hominis*), 1979.3.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제2판), 7-14항 참조.

57.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Temi Scelti di Ecclesiologia*, 1985, II 참조.

58. 레랭의 빈첸시오, *Commonitorium II*, 5, 『라틴 그리스도교 문학 전집』(*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CCSL*) 64, 25-26, 149면 참조.

59. 선교 교령 2항.

60. 복자 바오로 6세, 교황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 1975. 12.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제3판), 14항, AAS 68(1976), 13면.

61. 선교 교령 35항 참조.

62. 교회 헌장 10항 참조.

63. 교회 헌장 12.32항 참조.

64. 『가톨릭 교회 교리서』, 783-786항 참조.

65. 교회 헌장 12항 참조.

66. 「복음의 기쁨」, 119항, AAS 105(2013), 1069-1070면.

67.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 90항 수정 번역.

68.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AAS 107(2015), 1139.1141-1142면.

69. 「현대의 복음 선교」, 62항, AAS 68(1976), 52면; 참조: 「친교로서 이해되는 교회의 일부 측면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제2장.

70. 교회 헌장 13항.

71. 교회 헌장 23항.
72. 교회 헌장 13항.
73. 『가톨릭 교회 교리서』, 857항 참조.
74. 교회 헌장 19항.
75. 교회 헌장 21항 참조.
76. 교회 헌장 22항 참조. “주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거룩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하나의 사도단을 이루듯이, 비슷한 이치로(pari ratione)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도 서로 결합되어 있다.”
77. 교회 헌장 23항.
78. 계시 헌장 10항 참조.
79. 계시 헌장 8항.
80.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 122항 수정 번역.
81. 프란체스코 코코팔메리오, *La “consultività” del Consiglio pastorale parrocchiale e del Consiglio per gli affari economici della parrocchia*, in “Quaderni di Diritto ecclesiale”, 1(1988), 60-65 참조.
82. 교회법은, 장상이 어느 특정한 단체(collegium)나 집단(coetus)의 동의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나 집단이 법 규범에 따라 소집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27조 1항; 제166조; 참조: 제166-173조). 그 행위가 유효하려면 모든 이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제127조 1항).
83. 교회 헌장 27항 참조.
84. 「복음의 기쁨」, 126항, AAS 105(2013), 1073면 참조.
85. 「복음의 기쁨」, 102항 참조.
86. 교회 헌장 4.12항; 참조: 교황청 신앙교리성 서한, *Iuvenesit Ecclesia*, 10.
87. 계시 헌장 8항 참조.
88.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오늘의 신학: 전망, 원칙, 기준」(*Theology Today: Perspectives, Principles and Criteria*), 2012.3.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제1판), 45항.
89.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AAS 107(2015), 1143면 참조.
90. 전례 헌장 41항;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Christus Dominus*), 1965.10.28., 11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91.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AAS 107(2015), 1143면.
92. 교회법 제460-468조; 동방 교회법 제235-243조 참조. 동방의 전통에서 ‘시노드’라는 단어는 주교들의 회합을 가리킨다. 교황청 주교성-교황청 인류복음화성, *Istruzione sui Sinodi Diocesani*, 1977년. 교황청 주교성, 주교들의 사목 임무를 위한 지침 「사도들의 후계자」(*Apostolorum Successores*), 2004.2.2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제1판), 166-176항 참조.
93. 「사도들의 후계자」, 166항 수정 번역.
94. 「사도들의 후계자」, 166항.
95. 주교 교령 11항 ㄴ 참조.
96. 주교 교령 27항 참조.
9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 (*Presbyterorum Ordinis*), 7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98.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회와 세계에서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에 관한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1988.12.3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제4판), 25항, AAS 81(1989), 437면 참조.
99. 『로마교구 시노드 백서- 제2차 교구 시노드』(*Libro del Sinodo della Diocesi di Roma-Secondo Sinodo Diocesano*), 1993, 102면.
100. 「평신도 그리스도인」, 27항, AAS 81(1989), 441면 참조.
101. 교회 헌장 23항; 주교 교령 36항.
102. 「새 천년기」, 29항, AAS 93(2001), 285-286면 참조.
103. 「복음의 기쁨」, 69항 수정 번역, AAS 105(2013), 1049면.
104. “교회 관구의 수장이라는 이 직무는 수 세기 동안 고정되어, 교회에서 공동합의성을 드러내는 표징이기 때문이다”(프란치스코, 자의 교서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Mitis Iudex Dominus Iesus*], 지침 V: AAS 107[2015], 960면). 동방 전례의 가톨릭 교회들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관구 제도가 있다. 그 하나는 총대주교구 교회 안에 있는 관구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자치적인(*sui iuris*) 관구 교회의 형태이다(동방 교회법 제133-139조와 제155-173 조 참조). 후자의 자치적인 관구 교회가 지니는 법적 자치권(*ius se regendi*)은 공동합의성을 드러내는 특유한 형태이며, 교회 전체를 위하여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다(일치 교령 16항; 동방 교회 교령 3.5항 참조).
105. 라틴 교회는 동방 교회법 제322조에 언급된다.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서로 다른 전례들 간의 폭넓은 공동합의성의 한 형태이다.
106.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AAS 107(2015) 1143면.
107. 1917년 『교회 법전』에서는 관구 공의회를 최소한 20년에 한 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다(제283조). 현행 법전은 “타당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제440조).
108. 성 요한 바오로 2세, 세상의 희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교에 관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양 떼의 목자」(*Pastor Gregis*), 2003.10.16., 62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30호(200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32-133면.
109. 교회법 제753조와 제445조. 개별 공의회에 관하여: 교회법 제439-446조 참조.
110. 교회 헌장 23항; 전례 헌장 37-38항; 주교 교령 36.39항 참조.
111. 「복음의 기쁨」, 32항, AAS 105(2013), 1033-1034면 참조.
112. 교회 헌장 23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동방 가톨릭 교회들에 관한 교령 「동방 교회들」(*Orientalium Ecclesiarum*), 1964.11.21., 7-9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참조.
113. 교회 헌장 23항.
114. 프란치스코, 이탈리아 교회 제5차 회의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AAS 107 (2015), 1286면 참조.
115. 동방 교회법 제28조.
116. 「새 천년기」, 40항, AAS 93(2001), 295면.
117. 선교 교령 22항.
118.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AAS 107(2015), 1144면.
119. 교회 헌장 22항.
120. 교회 헌장 1.18항 참조.

121. 교회 헌장 28항; 주교 교령 4항; 교회법 제337조 1항 참조.
122. 교회 헌장 23항 ㄱ.
123. 「사도적 염려」 제1조와 제1조 ㄴ, 1965.9.15., AAS 57(1965), 776면; 참조: 주교 교령 5항; 교회법 제342-348조.
124. 주교 교령 5항 참조.
125.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AAS 107(2015), 1143면.
126.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AAS 107(2015), 1140면.
127. 교회법 제337조 3항.
128. “교황청이 하는 일의 보편적 성격(universal nature)은 베드로 직무의 보편성(catholicity)에서 유래하고 기원”하며, 그래서 그 “봉사적인 수위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하였다(교황청에서 성탄 인사 때 한 연설, 2017.12.21.).
129. 주교 교령 10항.
130. 일치 교령 6항.
131. 「복음의 기쁨」, 25-33항, AAS 105(2013), 1030-1034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주교회의 제5차 정기 총회, 「아파레시다 문헌」(*Aparecida Document*), 365-372항 참조.
132. 「복음의 기쁨」, 102항, AAS 105(2013), 1062-1063면.
133. 교회 헌장 1항. “이 세상의 순례에서, 하나이며 거룩한 교회는 끊임없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일치를 향한 긴장으로 점철되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아마도 전에 없이, 교회의 이러한 신비적이고 친교적인 차원을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교황청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 「친교 안의 형제적 삶 -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모으셨다”」, 1994.2.2., 9항.
134. 「새 천년기」, 43항, AAS 93(2001), 297면 참조.
135. 「새 천년기」, 43항, AAS 93(2001), 297면.
136. 「새 천년기」, 45항, AAS 93(2001), 298-299면.
137. 「복음의 기쁨」, 64.77항, AAS 105(2013), 1047.1052면 참조.
138.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 90항 수정 번역.
139. 「새 천년기」, 43항 수정 번역, AAS 93(2001), 297면.
140. 사목 헌장 24항.
141. 성 요한 바오로 2세, 성체성사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aristia*), 2003.4.1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제1판), 40항, AAS 95(2003), 460면.
142.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 「규칙서」(*Regola*), 제1장, 3, PL 32, 1378.
143.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AAS 107(2015), 1140면.
144. 「복음의 기쁨」, 228항 수정 번역, AAS 105(2013), 1113면.
145. 프란치스코, 회칙 「신앙의 빛」(*Lumen Fidei*), 2013.6.2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제1판), 27항, AAS 105(2013), 571면.
146. 복자 바오로 6세, 회칙 「주님의 교회」(*Ecclesiam Suam*), 1964.8.6., 81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40호(200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36-137면, AAS 56(1964), 644면 참조.
147. 「주님의 교회」, 81-82항 참조.

148. 「주님의 교회」, 87항 수정 번역.
149.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6.2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제1판), 4항, AAS 101(2009), 643면.
150. 노르시아의 성 베네딕토, 「수도 규칙」(*Regola*), 72,6 참조.
151. 성 요한 바오로 2세, 1995년 팔레르모에서 열린 이탈리아 교회 전국 대회에서 한 연설, 이탈리아 주교회의 사목 공지, *Con il Dono della Carità dentro la Storia*, 1996, 3항.
152. 계시 헌장 4항 참조.
153. 사목 헌장 4.11항 참조.
154. 성 요한 바오로 2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3.2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제1 판), 10항, AAS 82(1992), 672면 참조.
155.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AAS 107(2015), 1141면.
156. 「복음의 기쁨」, 154항, AAS 105(2013), 1084면 참조.
157. 교회 헌장 8항 참조.
158. 교회 헌장 15항 참조.
159. 일치 교령 3항.
160.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의 신학적 대화를 위한 공동 위원회, *Synodality and Primacy during the First Millennium: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in Service to the Unity of the Church*, Chieti, 2016.9.21., 1항 참조.
161. *Synodality and Primacy during the First Millennium: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in Service to the Unity of the Church*, 20항.
162. *Synodality and Primacy during the First Millennium: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in Service to the Unity of the Church*, 21항.
163. 신앙직제위원회, 『교회. 공동의 전망을 향하여』(*The Church: Towards a Common Vision*), 2013, 53장.
164. 일치 교령 11항 ㄷ 참조.
165. 「복음의 기쁨」, 238항, AAS 105(2013), 1116면.
166.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간추린 사회 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2004.4.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제2판), 52항; 참조: 「복음의 기쁨」, 178항, AAS 105(2013), 1094면.
167. 프란치스코,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5.2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제1판), 49항, AAS 107(2015), 866면 참조.
168. 프란치스코, 이탈리아 주교회의 제70차 총회 개막 인사, 로마, 2017.5.22.
169. 프란치스코, 주교성에서 한 연설, 2014.2.27.
170. 「복음의 기쁨」, 284항, AAS 105(2013), 1134면.